2023학년도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학교계획

배곧해솔중학교

Ⅰ 개요

1. 학교계획

가. 학교계획의 목표

○ 실효성 있는 학교계획의 수립으로 학교 구성원의 사고 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

○ 자신의 안전과 타인과 동료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역량 배양

○ 학교 안전 관리의 체계성(계획, 준비, 실행, 평가, 피드백) 확보

나. 학교계획의 내용체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학교계획 내용체계	안전한 교육활동 운영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 운영의 기본지침에 관한 사항
	학교안전교육의 내실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대비 훈련 등 학교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학교시설안전 점검·관리·조치	학교시설 안전점검 · 관리 및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학교안전문화 확산	학교 안전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안전사고 피해회복	그 밖에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다. 학교계획의 수립·시행

○ 학교장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제6항에 따라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학교계획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

2. 학교계획 추진현황

가. 학교안전교육 추진 실적

1) 교직원 안전교육 직무연수 이수 현황*(기준 :2023년.1월)*

연도 \ 구분		교직원 수(명)			안전관련 전문교육(15시간) 이수			
		교원	직원	계 (A)	교원	직원	계 (B)	이수율 (B /A)×100
2021.3. ~ 2023.1.	2021	74	21	95	51	2	53	55.8
	2022	90	15	105	87	12	99	94.2

※ 시설당직원, 시설미화원 2명 미이수

※ 3년마다 모든 교직원이 안전교육 직무연수(15시간 이상) 이수

※ 교원은 정규교사, 기간제교사, 시간제 강사를 말함

2) 학생 및 교직원 심폐소생술 교육 현황*(기준 : 2023년 1월)*

교육대상 인원수(명)				교육실시 인원 수(명)				실시비율(%)	
학생 (A)	교직원 수			학생 (C)	교직원 수			학생 (C/A)	교직원 (D/B)
	교원	직원	소계 (B)		교원	직원	소계 (D)		
1,303	90	15	1,408	1,303	90	15	1,408	100	100

3) 안전영역별·교육과정영역별 학생안전교육 이수시간 현황*(기준 : 2023년 1월)*

교육과정영역별 이수시간 / 안전영역(급별 필수이수시간)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이수시간 계
	1학기	2학기		
생활안전(중8)	8	8	0	16
교통안전(중8)	8	8	0	16
폭력 및 신변보호(중5)	5	5	2	12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중5)	5	5	2	12
재난안전(중5)	5	5	0	10
직업안전(중1)	1	1	0	2
응급처치(중1)	1	1	0	2
계(51)	33	33	4	총 70시간

나. 전년도 학교계획 추진실적 : 학교안전자가점검표로 대체

기본계획 각호	법제도	세부점검내용	계획수립[1]		전년도 실적[2]			추진실적 세부내용[3]
			○	×	○	△	×	
1. 예방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기본계획, 지역계획, 학교계획	학교계획 수립 시 안전담당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직원들이 함께 참여하였는가?	✓		✓			등하교시 교통안전 지도
		학교계획에서 안전업무와 관련하여 관련 교직원들의 역할과 책임에 대하여 명확히 기술하였는가?	✓		✓			
		학교안전계획의 취지와 목표를 학교실정에 맞게 적절히 설정하였는가?	✓		✓			
		우리 학교는 학교와 주변지역의 위험성을 파악한 후, 이에 적합한 학교안전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			
		학교안전계획은 교직원들 간에 명확히 공유되었는가?	✓		✓			
		안전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원(시간, 정보, 인원, 예산 등)과 수행 절차는 파악되었는가?	✓		✓			
2. 교육활동 운영의 기본지침	학사일정별 학교안전	학사일정별 연간 안전관리계획 <별첨6>은 각 계절별 재난 요소를 적절히 고려하였는가?	✓		✓			·매월 안전점검의 날에 훈련 중심의

기본계획 각호	법제도	세부점검내용	계획수립[1]		전년도 실적[2]			추진실적 세부내용[3]
			○	×	○	△	×	
		체험과 실습 중심의 안전교육을 계획하였는가?	✓			✓		코로나 19 상황으로 체험및실습 활동을 시청각, 토론 수업으로 진행 · 재난대피 훈련 기간 심폐소생술 활동 실시
		안전학습 관련 컨텐츠는 적절하고 풍부하게 준비하였는가?	✓		✓			
		시기, 활동, 행사별로 발생하기 쉬운 사고나 취약 학생 혹은 구역을 파악하여 예방조치를 할 계획을 세웠는가?	✓		✓			
	외부체험 활동 안전	현장체험학습 계획 시 현장체험학습 지침사항들을 교사들에게 공지하고, 계획에 게재하였는가?	✓		✓			
	학교주변 안전관리	학교안전의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 유관기관지자체, 소방서, 경찰서등) 간 협력 계획이 마련되었는가?	✓		✓			
		스쿨존 정비 방법은 마련되었는가?	✓		✓			
	안전약자 안전대책	요양호자(안전약자)를 파악하고, 안전약자 안전대책 <별첨3>에 따를 대책을 수립하였는가?	✓		✓			
3. 학교안전교육	예방 및 학교안전교육	안전교육 연간 계획표에서 학교와 학교 주변에 존재하는 위험요인들에 대한 정보를 교육 계획에 포함시켰는가?	✓				✓	· 학교구성원이 함께하는 '학교안전 점검의 날'운영(매월 4일)
		안전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배려도 교육에 포함 시켰는가?	✓		✓			
		학생 참여형 안전교육을 준비했는가?	✓		✓			
		안전교육 교사연수 연간계획은 준비되었는가?	✓		✓			
		안전사고 유형별 교육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		✓			
		교과 연계 방법이 수립되었는가?	✓		✓			
		안전 전문가 초빙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		✓			
	정기훈련	학교구성원 모두 체험할 수 있는 훈련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			
		훈련은 구체적 목표 및 평가 방법을 가지고 있는가?	✓		✓			
		훈련은 체험형·토의형으로 수립하였는가?	✓		✓			
		학교에서 일어날 위험이 높은 재난 유형을 고려하여 재난대비훈련을 계획했는가?	✓		✓			
		심폐소생술의 이론과 방법에 대한 교육과 훈련 계획이 수립되었는가?	✓		✓			
		안전약자를 포함한 훈련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			
4. 학교시설 안전점검·관리 및 안전조치	매월 안전점검의 날	매월 안전점검의 날 <별첨10>에 따른 학교시설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			·학교생활 속에 스며드는 안전문화 조성
	안전관리(제7조)실시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별첨11>에 따른 학교시설 안전점검을 계획·실시하였는가?	✓		✓			
	CCTV 관리	CCTV 관리 업무 분장은 명확한가?	✓		✓			
5. 학교안전문화 확산		안전사고 및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기록하고 자료를 기록해서 공유하며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		✓			· 안전 시화전 대회 개최로 학생들의

기본계획 각호	법제도	세부점검내용	계획수립[1]		전년도 실적[2]			추진실적 세부내용[3]
			○	×	○	△	×	
		각종 안전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류·공유·적용하고, 자주 사용하는 자료는 정기적으로 갱신, 정비하여 손쉽게 찾아 쓸 수 있게 준비하였는가?	✓		✓			창의적 안전의식 고취
		학교 구성원의 안전 관련 행동, 실천, 태도 등에 대해 인정과 격려를 해 줄 수 있는 학교 풍토가 조성되어 있는가?	✓		✓			
		학교안전은 학교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로 확보될 수 있다는 가치관 확산을 위한 홍보·협업 등의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			
		안전관리활동에 따른 성과를 정기적으로 확인할 방안을 마련했는가?	✓		✓			
		학교구성원이 학교안전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도출했을 때 이를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는가?	✓		✓			
6. 기타 사항		재난과 학교안전사고의 보고와 보상에 관한 절차와 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마련해 놓았는가?	✓		✓			

주) 1. 계획 수립 : ○ - 반영, × - 미반영

2. 전년도 실적 : ○ - 잘 추진했음, △ - 보통이다. × - 보통이하로 추진

3. 기본계획 각 호별로 전년도 해당학교의 주요 학교안전 추진 실적을 기재

3. 학교 현황 및 조직체계

가. 학교 현황

1) 일반현황

학교명	배곧해솔중학교			설립 구분	공립
주 소	15051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 150-23 (배곧동)				
전 화	031-8063-1805	FAX	031-8063-1892	홈페이지	http://bg-haesol.ms.kr/
교 장	정**		학교안전책임관	정**	

2) 학생 및 교직원 현황*(2023년 3월 2일 기준)*

학생 (명)	1학년	2학년	3학년	합계
	567	396	469	1,432

교직원 (명)	교원	행정직원	급식업무 직원	학생보호 인력	교육공무직원 및 기타	합계
	91	5	11	1	6	114

3) 학교 비상연락망 (별첨)

4) 학교 위치 및 비상대피로

○ 학교 위치

○ 소방차 진입 경로

○ 비상대피 안내도

1F 비상대피안내도
범 례
현 위 치
피난경로
계 단 실

2F 비상대피안내도
범 례
현 위 치
피난경로
계 단 실

3F 비상대피안내도
범 례
현 위 치
피난경로
계 단 실

4F 비상대피안내도
범 례
현 위 치
피난경로
계 단 실

5F 비상대피안내도
범 례
현 위 치
피난경로
계 단 실

○ 학년별 교내 소집장소 및 대피 장소

진입로								스	탠	드	본부석				스	탠	드						
농구장								운동장															
3학년(반별 2열)								2학년(반별2열)							1학년(반별2열)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1	2	3	4	5	6	7	8	9
9	10	11	12	13	14	15	16	8	9	10	11	12	13		10	11	12	13	14	15	16	17	18

< 비상대피 요령 >

1. 1층 동편 계단(주무관), 중앙현관 (행정실장), 1층 서편계단(주무관)이 대피하는 학생들의 안전 관리를 담당
2. 보건교사는 응급키트를 준비하여 구령대에서 대기
3. 교과 담당교사가 학생들을 임장 지도해서 이동한 후 담임교사는 학급으로 이동하여 인원 파악, 부담임은 해당 학급으로 이동하여 학생들의 질서 지도
4. 3학년, 2학년, 1학년의 순으로 대피 장소로 이동 학급별 2열 종대로 집합
5. 학년부장(부재 시 1반 담임)은 학년별 인원 점검 후 본부석으로 보고

○ 재난 및 지진 대피장소 및 이동경로

전학년 대피장소 및 이동경로

장소: 시흥배곧한라비발디 3차 지하주차장

▶ 이동요령 ◀

1. 3학년 1반을 선두로 2학년, 1학년 1반부터 마지막 반 순으로 담임선생님이 임장하며 이동한다.
2. 3학년 담임교사가 선두에서 인솔하며, 1학년 마지막 반 담임교사가 후미 학생들 확인 이동한다.
3. 지하대피소로 이동하는 학생들 인원을 파악한 후 대피 훈련의 목적을 설명한 후 복귀

▶ 교사별 준비물 ◀

1. 전 교직원 : 빨간색 호루라기
2. 선두 및 후미 인솔교사 : 경광봉 및 형광 조끼 착용
3. 신호등 주변 안전지도교사 : 경광봉

나. 학교 안전 조직

1) 안전관리추진 조직

□ 평상시

○ 평상시의 안전관리체계는 학교안전업무 구성요소인 안전교육, 생활지도, 안전점검, 비상훈련, 응급구조 등으로 업무를 세분화시켜 조직을 구성하거나, 학교의 부장 직제에 따라 안전 업무를 분담하여 조직 구성 가능

□ 유사시

○ 재난 또는 사고를 대비한 유사시 안전관리체계는 평상시의 안전관리체계와 연속성을 지니되, 상황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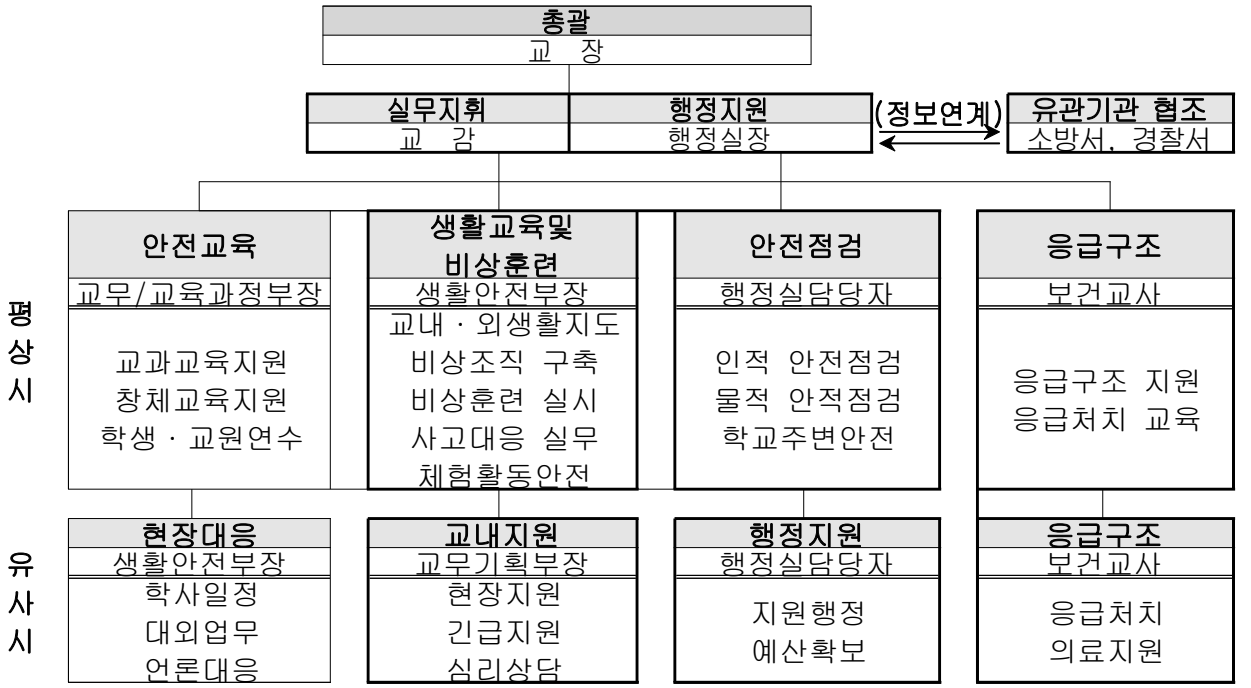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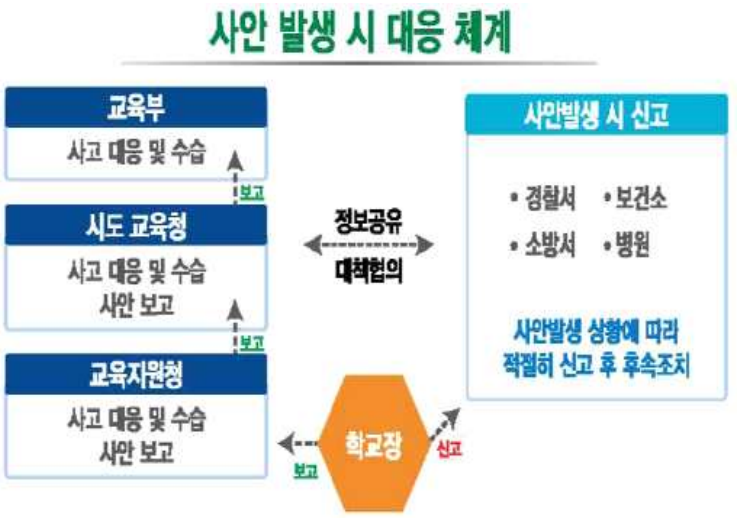

교육부

⬆ 보고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학생안전과】

※반드시 업무담당과, 학생안전과 동시 보고

▸ TEL : (주)031-820-0790~0793
(야) 031-820-0154, 0524

▸ FAX : 031-821-1098

⬆ 보고

시흥교육지원청

【교수학습지원과 학생안전팀】

▸ TEL : 031-488-2483, 2084

▸ FAX : 031-488-2489

⬆ 보고

배곧해솔중학교

【상황실】

▸ TEL : 031-8063-1800, 1803

▸ FAX : 031-8063-1890

※ 위급한 상황일 경우 학교에서 교육지원청, 도교육청, 교육부에 모두 사안 발생 보고를 하도록 한다.

2) 안전관련 업무

○ 학교 안전 관련 업무는 학교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직원이 협력하여 담당 부서를 지정하고 해당 업무 추진

구분	실무자	역 할
최초 발견자		- 일일구 이구조 삼보고(5W1H, 행정안전부 상황전파시스템 가동) - 사고현장 보존(사진 및 동영상, 가림막 설치 등) - 학교장(인솔책임자) 보고
대책 반장	학교장	- 학교 사고대책반 운영·총괄 - 사고대책반 소집 및 회의주재 - 사안논의 및 사고처리안 결정 -> 해결방안 지시 - 학교운영위원장, 학부모회장 사고 통지 및 협조 요청 - 사안처리에 대한 보호자 불신해소 대책강구
대책 부반장	교감	- 학교장 부재 시 업무 대리(현장사고 대책 총괄) - 상황실 운영(전용 전화번호 및 기록자 2인 지정) - 팀 구성 및 역할 배정 - 정보 종합 및 분석(언로 일원화 : 언론, 학부모, 시민단체 등) - 팀별 사안 처리 진행상황 확인(체크리스트 검토) - 유관기관 협조 의뢰 - 보호자에 대한 대응 및 요구사항 논의(대책부반장 및 팀장)
현장 대응팀	생활안전부장 예체환경부장 미래교육부장	- 현장대응반장(담당자별 세부역할 지시) - 교감 부재 시 업무대리(현장사고 대책 총괄) - 학년 피해 상황 종합(피해학생 후송병원별 학생인원 파악) - 사고현장 이동 및 상황파악, 정보수립 - 최초 사안 조사 및 사안보고서 작성 - 사고현장 이동 및 상황파악, 정보수립
	학년부장	- 사안 관련 학부모 응대 - 학부모 의견 수렴 - 학년 관리(학생 동요 및 추가 사고 방지 대책 수립)
	학급담임	- 보호자 연락 - 학급 학생의 심리적 안정 및 교실 정상화 노력
	생활안전부 안전담당교사	- 최초 사안 조사 및 사안보고서 작성 - 시간대별 조치사항 기록(현장대응팀 일지 작성) - 피해상황 종합(피해학생 후송병원별 학생인원 파악)
	사안관련교사	- 사안관련 학생 정보 제공(상담기록, 교우관계, 가정환경 등) - 보호자 연락 및 병원동행(교내사고일 경우) - 학급학생의 심리적 안정 및 교실 정상화 노력
	보건교사	- 응급조치 및 의료자문 - 사망자 시신 수습 및 병원 동행(교내사고의 경우) - 학교안전공제회 업무 처리(피해 학생 및 교직원 등 보상)
교내 지원팀	교무기획부장 교육연구부장 교육과정부장 교육정보부장 민주자치부장	- 교내지원팀(담당자별 세부역할 지시) - 학생현황 파악 - 직원회의 개최 - 학사일정 검토 - 비상연락(전직원, 학부모) - 장례(조문)계획 수립 - 피해학생 및 가족 지원 - 상황실 전화응대(언론 일원화 : 언론, 학부모, 시민단체 등) - 시간대별 조치사항 기록(현황만 및 체크리스트, 일지 작성)
	진로상담부장 (Wee클래스)	- 사안 관련 학급 및 현장목격자 등 상담 필요 학생 상담지원 (필요시 외부지원팀 자문 및 지원 요청)
행정 지원팀	행정실	- 학생 귀교 대책(이동수단 확보)수립 - 현장이동 지원 및 인적.물적 지원 - 물적 피해 현황 파악 - 추가 사고 위험 여부 확인 - 교육시설공제회 업무 처리(재산 및 시설) - 행.재정 지원
외부 지원팀	협력지원단체	- 전문 외부기간 고유 역할 진행
	학운위위원장 학부모회장	- 사안 처리에 대한 학교 협조(유언비어 확산 방지) - 사안 관련 학부모 중재 - 학부모 봉사단 조직 및 운영

3) 학교식중독 교내대책반의 구성·운영

○ 대책반의 주요 임무는 학교식중독 발생 시 학사대책, 환자이송, 행・재정지원, 역학조사・대외협력, 환자파악으로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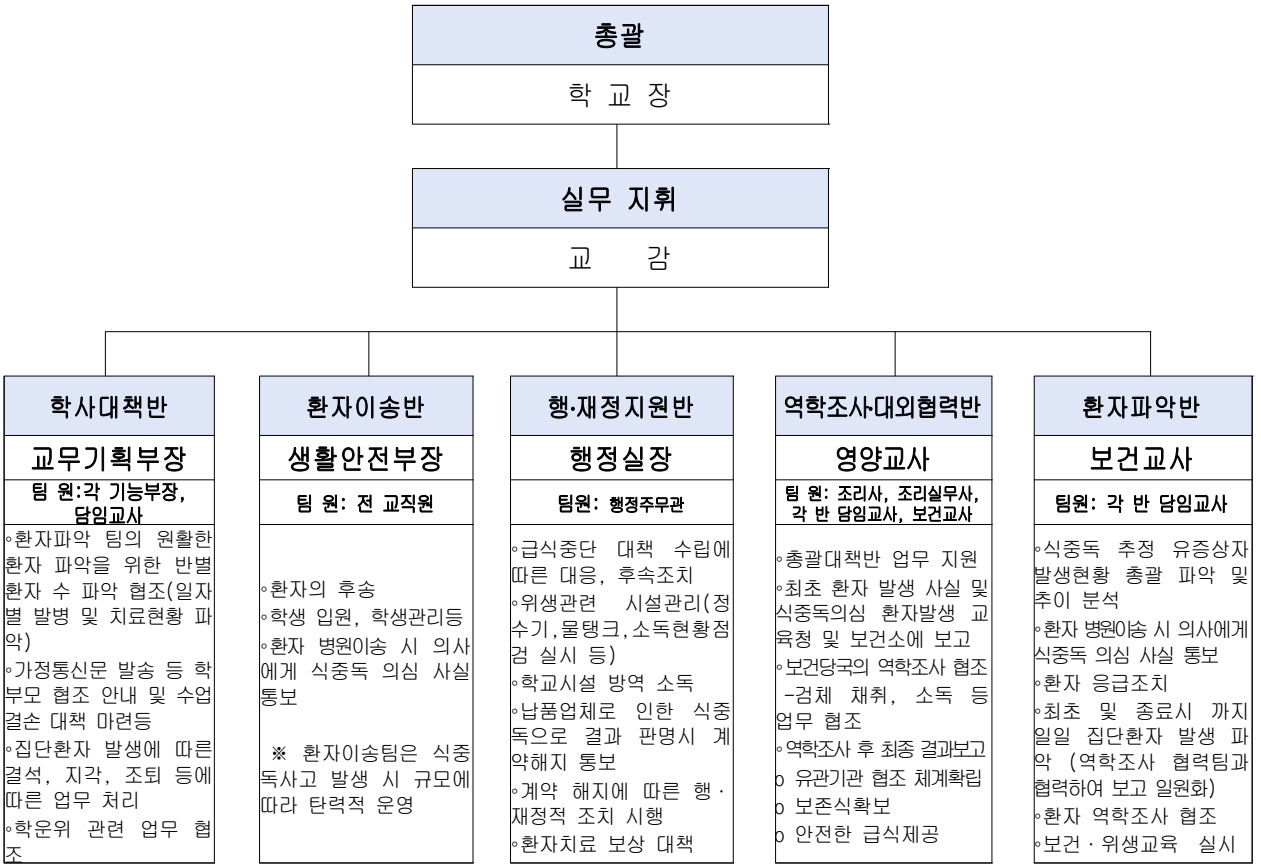

4) 응급구조체계 조직

○ 각종 안전사고 및 재난사고의 경우, 시의적절한 응급구조는 사고피해를 최소화하고 조속한 일상복귀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관건

- 응급처치담당, 후송담당, 행정지원 및 유관기관 협조 등으로 구별될 수 있고, 학교실정에 맞게 조직 체계 마련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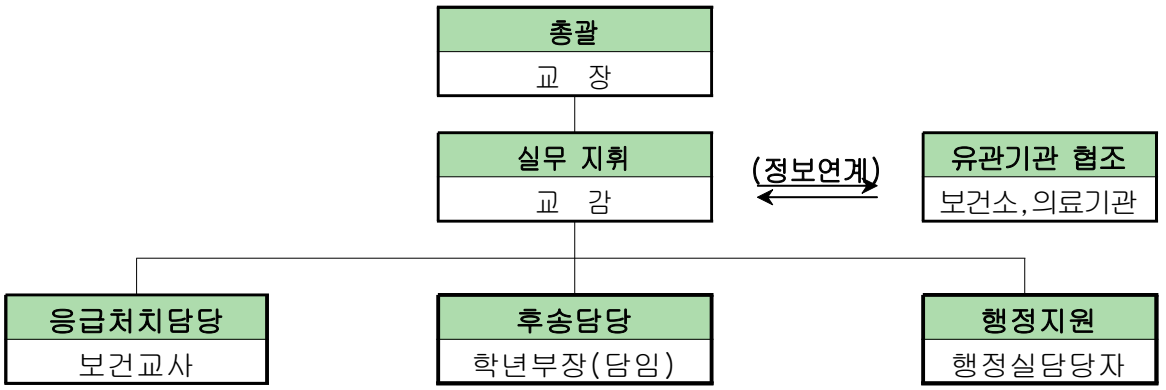

사안 대응 체크리스트(체험학습 기준이므로 상황에 따라 변경 적용)

확 인 내 용	조치시간	확인자	비고
☐ 사고 신고 (일일구, 이구조, 삼보고)			
☐ 사고현장 보존 및 구호조치 (2차사고 예방)			
☐ 상황보고 - 학교장 보고, - 상급기관 보고			
☐ 현장사고 수습본부 가동 - 상황실 운영(전용 전화설치 및 기록자 2인 지정) - 반 구성 및 역할 분배 - 반별 사안처리 및 진행상황 확인			
☐ 언론 대응 (본청 대변인실과 협조)			
☐ 현장대응반장 - 현장대응반 담당자별 세부 역할 지시 - 해당 학년 피해상황 종합 - 후송병원별 담당교사 배치			
☐ 피해학생 보호자 연락			
☐ 사고관련 정보 수집 - 최초신고자 진술 - 목격자 진술 - 사고현장 사진 또는 동영상 확보 - 기타 사고관련 자료			
☐ 사안보고서 작성			
☐ 피해상황 확인 (시간대별) - 인적 피해; 사망 명, 부상(중·경상) 명, 실종 명 - 물적 피해;			
☐ 사안당사자 정보제공 및 반별 학생관리			
☐ 교내지원반장 - 학생 현황 파악 - 장례(조문) 계획 수립 - 학사일정 조정계획			
☐ 비상연락 - 전직원, 학부모			
☐ 관련문서 작성			
☐ 상담지원 - 요상담, 요보호학생 조치			
☐ 행정지원반장 - 현장이동 지원 및 인적·물적 지원 - 학생 귀교 대책 계획			
☐ 유관기관(자문기관) 협조 요청 (법률자문 및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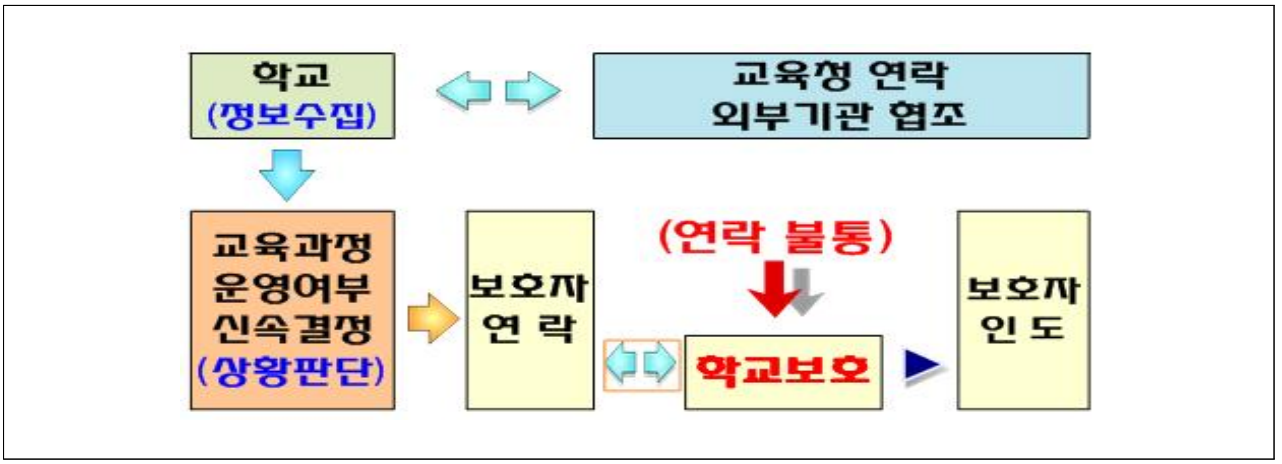

* 지진, 태풍 등 자연재난은 지역사회 전체에 광범위한 피해를 발생시킴으로 학생의 통학로 유실, 가정도 피해를 입었을 것을 가정하여 대응

* 원칙적으로 보호자가 학생을 직접 인솔해서 귀가할 수 있도록 조치

5) 유관기관 협조체계

○ 학교안전은 학교 이외의 유관기관, 지역사회, 학부모의 협조·협력체계를 사전에 구축함

○ 안전교육, 안전점검, 비상훈련, 사고구조, 사고복구 등 일련의 학교안전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

기관명	시흥 소방서	지역/유관기관	학부모
배곧해솔중학교	담당 : 시흥소방서 Tel : 031-310-0502	생활지도지원 담당 : 시흥경찰서 Tel : 031-310-9349	생활지도지원 담당 :학부모지원단

4. 안전 관련 업무

○ 학교안전 관련 업무는 학교 현장의 실정에 맞게 교원과 직원이 협력하여 추진

○ 학교장은 학교실정, 교직원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담당부서 등 지정

○ 업무 분장 시 부서간, 교직원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지정 권고

담당부서		관련업무
교무실	생활안전부	◦ 학교안전종합계획 수립 ◦ 학교폭력 및 선도 업무 처리, 현장체험학습 안전 계획 수립, 안전지도 총괄
	학년부	◦ 학년별 생활지도 계획 수립 및 실행 ◦ 현장체험학습 계획 수립 및 실행 ◦ 생활안전교육 상시 전개
	예체환경부	◦ 요양호자 파악 및 관리
행정실		◦ 월별 학교점검의 날 계획 수립 및 실행

Ⅱ 세부 추진 계획

1. 안전한 교육활동 운영

가. 교육활동 안전 대책

1) 학사일정별 안전관리 연간 계획(코로나-19로 변동 가능)

구분	학사일정		안전교육	비상훈련	시설관리
	교내	교외			
2월	학교안전계획서 작성				
3월	입학식, 개학식 학부모총회			황사·미세먼지 훈련	매월 안전점검의 날
4월	리더십 캠프 과학의날 행사		행사 안전교육 현장체험 안전교육 실험 실습 안전교육	실험·실습안전 훈련	매월 안전점검의 날
5월	체육한마당		교내·외 안전사고 예방 지도 재난 안전교육 스포츠 활동 안전교육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화재 훈련)	매월 안전점검의 날 학교시설 안전점검 원격연수
6월	2,3학년 지필평가		화재 대피 훈련 수상 안전 예방 지도		매월 안전점검의 날 학교시설 안전점검 전달연수
7월	여름방학		폭염 관련 예방 지도		매월 안전점검의 날
8월	여름방학 개학		물놀이 및 식중독 예방 지도		매월 안전점검의 날
9월	리더십 캠프		행사 안전교육 현장체험 안전교육 화재 예방 지도 강화	민방공훈련 **(화재 관학합동)**	매월 안전점검의 날
10월	축제		안전사고 예방 중점지도 행사 안전교육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매월 안전점검의 날 학교시설 안전점검 실시
11월	전교학생회장 선거 3학년 지필평가		화재 예방 지도 강화	실험·실습안전 훈련	매월 안전점검의 날 학교시설 안전점검 결과 보고
12월	2학년 지필평가 자유학기제발표		행사 안전교육 겨울철 관련 안전교육		매월 안전점검의 날
1월	겨울방학 졸업식, 종업식		졸업식 전후 교내·외 안전교육		매월 안전점검의 날
2월					매월 안전점검의 날

2) 학생 생활 안전 지도

목차

Ⅰ. 교내안전
1. 수업시간
2. 휴식시간
3. 점심시간
4. 방과 후 학교

Ⅱ. 교외안전
1. 학생안전지역
2. 교외보호인력
3. 등하교
4. 현장체험학습

Ⅰ. 교내안전

1. 수업시간

수업시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통해 안전하면서도 즐거운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를 위해 교사의 준비 및 지도사항과 학생들이 준수해야 할 안전수칙을 정리하였다.

가. 과학시간

화학약품, 위험물질 사용에 대한 취급방법과 안전수칙과 알콜램프 등 가열기구 이용 시 주의사항을 숙지한다.

1) 교사 안전조치

과학담당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비치하고 실험용기, 시약 등에 대해 사전에 철저히 파악해 둔다. 실험실습 전 충분히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조치를 강구해 놓는다. 독성이 있거나 냄새가 좋지 않은 기체가 발생하는 실험은 후드가 있는 곳에서 하도록 하고, 후드가 없을 때는 창문을 열어놓는다.

2) 학생 안전수칙

○ 시약류 취급

실험실 기기의 작업 및 조작은 지정된 순서를 정확히 따라서 하고, 취급할 약품의 사용법과 예방책을 교사가 설명할 때까지 약품에 손대지 않는다. 약품을 사용한 후에는 제자리에 보관하고 남은 것을 다시 시약병에 넣지 않는다. 다만 많은 양을 사용하는 아세톤, 에탄올, 황산, 염산, 수산화나트륨용액, 과산화수소 용액 등은 회수하여 재사용 할 수 있다.

가연성 물질을 다룰 때는 화기를 주변에 놓지 않는다. 눈금이 새겨진 유리 기구(눈금 실린더, 뷰렛, 피펫 등)는 절대로 불로 가열해서는 안 된다. 시험관에 화학물질을 가열할 때는 마개를 열고 입구가 다른 사람의 얼굴이나 몸을 향하지 않도록 한다. 시약을 덜어낼 때는 시약의 이름을 확인한 후 깨끗한 용기에 필요한 양 만큼 덜어낸다.

지시가 없는 한, 약품의 맛을 보아서는 안 되고, 냄새를 알고자 할 때는 얼굴을 향하여 손으로 부채질하면서 냄새를 맡아야 한다. 강산이나 강염기를 희석시킬 때는 반드시 물을 먼저 붓고 산이나 염기를 조금씩 부어가며 희석시킨다. 시약병을 실험실 내에서 들고 다니지 않고 시약병이 비치된 실험대에 가서 적당량을 받아 써야 한다. 유독휘발성 액체시약은 스포이트로 옮긴다.

○ 가열기구 실험

물질이 휘발성일 때는 마개를 단단히 하여 통풍이 잘되는 곳에 두고, 인화성이 큰 물질은 불 가까이에 두지 않는다.

알코올램프 안의 알코올의 양은 30~80% 정도로 담아 쓰고, 알코올램프 불을 기울여 알코올램프에 불을 붙이는 일이 없도록 한다. 알코올 램프는 입으로 불어서 끄지 않고, 뚜껑을 옆에서 살며시 덮어 끈다. 잠시 후 뚜껑을 살짝 열었다가 다시 잘 덮는다.

나. 체육시간

체육수업 전에 미리 파악하고 조치할 사항과 수업시간에 지켜야 할 일을 숙지하여 지도한다.

1) 교사 안전조치

요양호자, 신체허약자, 심장질환자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견학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에 대하여는 수업 전후에 준비 운동과 마무리 운동을 충분히 한다. 정확한 운동방법과 주의사항을 완전히 숙지시킨 후 운동을 실시하고, 단계별, 수준별로 기능을 익힐 수 있도록 지도한다.

운동 중에는 운동을 하고 있는 학생 뿐 아니라 기다리고 있는 학생들의 행동도 수시로 관찰한다. 경쟁이 과열되면 과도한 신체접촉으로 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지므로 경쟁이 과열되지 않도록 분위기를 적절하게 통제한다.

2) 학생 안전수칙

체육시간에 몸이 아프면 미리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쉰다. 개인 운동기구는 반드시 한 사람씩 이용토록 하고 체육기구 운반은 여러 학생들이 협동하여 조심스럽게 한다.

다른 친구들의 활동 모습과 내용을 열심히 보고 익히며, 경기규칙과 질서를 잘 지키고 승부에 너무 집착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한다.

다. 미술시간

미술시간 중 안전사고는 미술도구의 안전한 사용 방법을 중심으로 지도한다.

1) 교사 안전조치

도구의 안전한 사용방법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 지도하고 도구 사용이 서툴거나 실수가 많은 학생은 별도로 지도한다.

2) 학생 안전수칙

조각칼은 칼이 지나가는 방향에는 몸이나 손을 놓지 않도록 하고, 커터 칼의 경우 너무 길게 빼서 사용하지 않고 손은 칼이 지나가는 부분에 놓지 않도록 하며, 사용 후에는 칼날을 넣는다.

글루건은 노즐이 손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달구어진 접착액은 온도가 떨어지기 전까지는 맨손으로 만지지 않는다. 니퍼, 펜치, 가위는 물건이 물리는 부위에 실수로 손의 일부가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라. 실습시간

가열 또는 전열기구, 칼 또는 날카로운 기구 사용 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지도한다.

1) 교사 안전조치

안전수칙을 충분히 지도하고 중요한 내용은 써서 보기 좋은 위치에 부착한다. 준비된 식품재료의 안전성을 확인한다.

가스 불을 켜기 전에 가스가 새는지(냄새) 확인하고 창문을 열어 실내를 환기시킨다. 칼날이 무뎌지면 힘을 주게 되어 다칠 염려가 있으므로 적당하게 갈아졌는지 미리 확인한다.

2) 학생 안전수칙

○ 가열기구 다루기

가스기구의 불을 켜는 순간 불이 붙었는지 확인하며, 가스기구 주위에는 인화물질을 가까이에 놓지 않는다. 가스를 다 쓴 후에는 점화 스위치는 물론 중간밸브도 잠근다.

조리 시에는 국물이 넘쳐 불이 꺼지지 않았는지 지켜본다. 냄비를 가열 할 때, 냄비 뚜껑 및 손잡이에 화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한다.

○ 부엌칼, 과일칼 다루기

재료를 썰 때는 재료를 잡고 있는 손을 칼의 뒤쪽에 놓아 베이지 않도록 주의하고 칼날은 아래쪽을 향하게 한다. 칼을 바닥에 떨어뜨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절대 칼을 들고 장난하지 않는다.

2. 휴식시간

쉬는 시간은 교사의 임장이 약해지는 반면 학생들은 긴장이 완화되면서 신체활동이 왕성해지는 시간대이므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시설물 점검과 확인 및 학생들의 생활태도 등에 대한 교육방법 등을 숙지한다.

가. 교실, 복도, 계단, 난간

학교에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실, 복도, 계단, 난간에 대한 시설점검과 이용방법지도를 통해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

1) 교사 안전조치

계단, 복도 등 비상구, 비상 통로 또는 비상용 기구에 '비상'이라는 안내판을 설치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계단 난간의 높이는 90cm이상이 되는지 확인한다. 난간은 계단참을 포함하여 각층의 계단 전체에 걸쳐서 설치하고 높이가 3.7m를 초과하여 설치하여서는 안 되며, 중간에 계단참은 가로 세로의 길이가 각각 1cm이상 되도록 하고 불균형 계단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복도와 계단 등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통로바닥이 물기 등의 액체 이물질로 젖어 있지 않은지 수시로 관찰하여 물기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제거토록 한다.

2) 학생 안전수칙

반드시 우측통행을 하고, 두 세 개의 계단을 한꺼번에 오르고 계단 난간을 넘거나 타고 내려오는 등의 위험한 행동은 절대 하지 않도록 한다. 계단 및 복도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바닥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한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에는 난간을 잡고 이동하는 것이 안전하다. 여러 사람이 함께 계단을 오르내릴 때에는 앞사람과 닿지 않도록 간격을 두고 움직여야 한다.

교실이나 복도에서 공놀이나 술래잡기 놀이를 하지 않는다. 칼, 가위 등 위험한 물건으로 장난치거나 뾰족한 연필 등으로 장난을 치면 다치기 쉬우므로 조심한다. 끈이나 줄로 목을 잡아당기는 장난은 위험하므로 하지 않도록 하고, 친구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지 않는다.

나. 유리창

유리창 파손 대비 및 파손 시 조치사항 등에 대한 안전지도를 실시한다.

1) 교사 안전조치

추락 방지용 안전 난간과 안전대 및 안전망을 설치한다. 유리창에는 칼라(백색)필름을 부착하고 깨지면 테이핑 처리한다. 깨진 유리 교체 및 청소는 안전 장갑을 착용하고 학생을 직접 시키지 않는다.

2) 학생 안전수칙

창문 밖으로 물체를 던지는 위험한 행위는 하지 않는다. 창틀에 올라가서 밖을 보거나, 윗몸을 밖으로 내밀거나 또는 창틀에 기대어 앉는 행위를 하면 떨어질 위험이 있다.

다. 책걸상

책걸상 사용방법과 파손 시 안전조치에 대해 지도한다.

1) 교사 안전조치

책상 모서리 부분은 라운딩 또는 충격완화 고무를 부착하는 등 충격으로 인한 타박상을 방지토록 한다. 책・걸상의 정기적 수리 및 교체, 안전도 유지를 위한 지속적 관리를 통해 책걸상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2) 학생 안전수칙

책걸상에 걸터앉지 않고, 의자에 앉으려는 친구의 의자를 몰래 빼는 장난을 하지 않는다. 책걸상들 사이의 좁은 통로에서 뛰지 않는다.

라. 세면장, 급수대, 화장실

세면장, 급수대, 화장실 이용 방법에 대해 안전지도를 한다.

1) 교사 안전조치

세균에 따라 일반적인 손 세척으로는 쉽게 제거되지 않는 세균도 있다. 따라서 위생적인 손 씻기를 위해 올바른 손 씻기 6단계 방법을 익히게 지도한다.

세면장, 급수대, 화장실은 물기가 많은 곳으로 항상 주의하고, 수시로 바닥상태를 점검하여 안전하게 이용한다.

2) 학생 안전수칙

비누를 사용하여 손을 씻으면 세균, 먼지를 씻어내 주어 전염병의 70%를 예방할 수 있다. 세면장, 급수대, 화장실을 이용할 때는 한 줄로 서서 이용한다. 화장실 사용 후에 물을 반드시 내린다.

바닥에 물기가 있는 경우 낙상의 위험이 있으므로 항상 바닥상태에 주의토록 하고, 세면대 위에 올라가서 발을 닦으면 세면대가 파손되어 크게 다칠 수 있으므로 절대 올라가지 않도록 한다.

마. 승강기

승강기 안전진단과 올바른 탑승 지도를 실시한다.

1) 교사 안전조치

정기적인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승강기 탑승 수칙을 지도한다.

2) 학생 안전수칙

승강기는 몸이 불편한 친구들이 이용하도록 하고, 승강기 문에 기대거나 강제로 열지 않도록 한다. 승강기 안에서 뛰거나 장난치지 않으며, 버튼이나 스위치를 장난으로 난폭하게 다루면 안 된다. 승강기 안에 쓰레기를 버리면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승강기에 이상이 생기면 외부에 연락하고 승강기 안에서 조용히 기다린다. 승강기를 타거나 내릴 때 승강기가 정지하면 즉시 행동하지 않고 잠시 동안 내부나 외부를 살핀 후 행동한다.

화재 시에는 절대로 승강기를 타지 않고 비상계단을 이용한다. 사용중지, 고장 또는 점검 중이라는 표시가 붙은 승강기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는다.

3. 점심시간

점심식사 준비와 배식, 식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또는 사고 유형을 파악하고 사전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가. 교사 안전조치

평소에 예절교육과 함께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배식차 운반 요령 및 배식차를 여는 방법에 대해 지도하고 교사는 아동과 함께 급식준비에 참여한다. 배식 과정에서 질서를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며 앞 사람과 적정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나. 학생 안전수칙

1) 배식차 운반 시

배식차를 운반할 때는 놀이기구처럼 다루지 않는다. 배식차를 난폭하게 밀지 않으며, 앞의 사람과

부딪히지 않도록 조심해서 운반한다. 배식차를 열 때 손가락이 틈새에 끼지 않도록 주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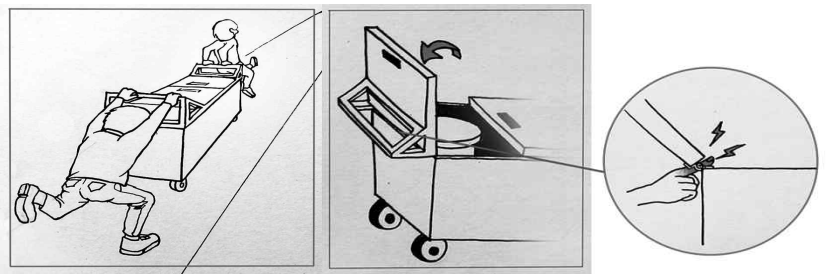

[그림2-18] 배식차 운반시 주의사항

2) 배식 시

차례로 줄을 서서 서두르지 않고 배식을 받는다. 배식할 때는 장난을 치지 말고 차례를 기다린다. 식판을 옮길 때는 주변에 친구가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한다.

음식물이 바닥에 떨어지거나 흐르게 되면 미끄러워져서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조심하며, 만약 음식물을 바닥에 흘렸을 경우 친구들의 안전을 위해 바로 휴지로 닦도록 한다.

뜨거운 음식을 운반할 때에는 흘리거나 튀지 않도록 조심한다. 음식은 먹을 만큼만 알맞게 담도록 한다. 식판을 옮길 때에는 두 손으로 옮기도록 한다.

3) 급식도구 사용 시

급식도구는 사용법에 맞게 바르게 사용한다. 젓가락으로 친구를 찌르는 행동을 하지 않고, 숟가락과 젓가락을 구부리는 장난을 하지 않는다.

4) 음식을 먹을 때

음식물은 천천히 꼭꼭 씹 어서 삼키고, 입에 음식물을 넣고 말하지 않는다.

4. 방과 후

방과 후에 안전사고 예방을 통해 안전하고 교육적인 방과 후 활동이 이뤄지도록 노력한다. 이를 통해 학생의 소질 계발과 취미, 특기 신장을 위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가. 청소시간

문 열기-털기-닦기-정돈하기-문 닫기와 같은 청소 순서에 따른 안전한 청소 용구 사용 방법을 지도한다.

1) 교사 안전조치

교실 출입문은 가능한 미닫이문으로 교체하여 충돌, 협착 등의 사고를 예방한다. 교실바닥의 물기를 제거하고 청결을 유지토록 한다. 교실 내 액자나 선풍기 등 부착물의 낙하 방지를 점검한다. 교실청소 시 중량물(책상) 취급 시 2명 이상이 운반하고 교실 내 바닥, 통로 등의 끝이나 개구부로부터 추락을 확인하고 방책을 설치한다.

2) 학생 안전수칙

청소 순서에 따라 청소하고, 압정이나 본드로 부착되어 있는 게시물의 먼지를 제거할 때 특히 주의한다. 청소 시간에 비치된 가구나 청소 도구로 장난치지 않는다.

화장실 등의 바닥이 미끄러운 곳에서는 뛰거나 장난치지 않는다. 청소 후에는 대걸레, 빗자루, 양동이 등 청소도구를 제자리에 정리해서 보관한다.

나. 놀이기구 이용

놀이기구 및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놀이기구 안전수칙을 지도한다.

1) 교사 안전조치

○ 철봉대, 씨름장 등 각종 체육 시설의 안전성 확보

철봉대 평행봉 등의 적정 크기, 규격 등 구분 설치 및 용접부위 결함 유무를 확인한다. 철봉대, 평행봉 주변(15cm이상)과 씨름장(20cm이상)은 미세모래사장으로 하고 정기적으로 교체하며 모래 턱은 고형물질(나무, 철 등) 사용을 금지한다. 뜀틀, 늑목놀이 시 주변에 매트리스 등을 필히 구비하여 충격을 완화하도록 한다. 축구, 핸드볼 골대 그물 등은 색상이 있는 그물을 설치하고 충격완화용 고무, 스펀지 등으로 안전보호대를 설치한다. 회전체 기구 주위에 사람 접근 방호 장치를 설치한다.

○ 운동장의 청소 및 관리

운동장 주변 파손된 하수구, 맨홀, 웅덩이 등을 신속하게 개・보수하고 위험표지판 설치 등으로 추락을 방지한다. 운동장 주변 파손된 울타리, 벽 등은 개・보수 및 교체하고 안전 난간, 안전축대를 설치한다. 나뭇가지가 놀이시설 주변에 나와 있으면 가지치기를 하여 신체 특히 눈을 보호한다.

○ 기타 놀이시설 안전 유무

기타 학교 및 놀이시설물 구조진단 등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담장에 5mm이상의 균열(Crack)이 발생했는지 경사의 기울기 등을 확인한다.

○ 학생 안전수칙

여름철 너무 뜨겁거나 겨울철에 얼어 있을 때에는 이용하지 않는다. 흙 묻은 손으로 얼굴이나 눈을 비비지 않는다. 손에 물건을 들고 놀이기구를 이용하지 않는다. 놀이기구에서 친구를 미는 등 위험한 놀이나 행동을 하지 않는다. 놀이기구 주변은 위험하기 때문에 놀이기구를 이용할 때 친구와 싸우지 않도록 하고, 흙이나 물건을 던지지 않는다.

놀이기구를 이용할 때에는 정해진 계단으로 순서를 지키며 차례대로 타고 내려오도록 하고, 계단을 거꾸로 올라가지 않는다. 계단을 타고 내려온 후에는 재빨리 비켜준다.

그네를 탈 때는 그네가 완전히 정지한 후에 타고 내리고, 친구가 타고 있는 근처에는 가지 않는다. 배를 깔고 엎드려 타거나, 두 명이 한 그네에 타지 않도록 한다. 줄을 꼬지 않고 타야 하며, 그네에서 뛰어 내리지 않는다.

회전대가 회전하는 도중에 뛰어내리거나 뛰어오르면 관성에 의해 사고를 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회전 중에는 같이 탑승한 사람과 밀고 당기는 등의 장난을 치지 않는다. 회전대를 갑자기 고속으로 회전시키지 않도록 하고, 회전 중에 회전대를 멈추게 하려고 붙잡지 않는다. 회전대 밑으로 발이나 몸이 끼일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수영장을 이용하는 체육활동 시 수영장 안에서 뛰거나 친구를 밀거나 장난을 치지 않도록 하고 자신의 키보다 깊은 수심에서 수영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방과 후 학교

방과 후 학교는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시간을 활용하여 학생 보살핌, 청소년 보호 선도, 자기주도적 학습력 신장, 인성, 창의성, 특기 계발 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다. 강사는 현직 교원과 외부강사, 자원봉사자 등 지역사회의 가용 인적자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활용한다.

이처럼 방과 후 학교는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시간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선택에 따라 운영되기 때문에 학교의 학생에 대한 관리·감독이 상대적으로 약해지므로 학생들의 안전지도에 각별히 주의를 요한다. 이를 위해 방과 후 학교 관리자는 다음의 사항들을 이행하여야 한다.

<표2-1> 방과 후 학교 안전관리를 위한 이행사항

○ 방과 후 학교 안전관리 책임자 임명 ○ 학생안전 생활지도 계획 수립 ○ 야간지도 책임자 임명 ○ 비상연락망 구축학부모 알림체제 구축 ○ 방과 후 학교 교실 순시	○ 등하교 관리 ○ 차량이용자 관리, 안전사고 예방교육 실시 ○ 학교외부인 출입 단속 강화 ○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1) 안전관리계획

학교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할 때 방과 후 학교안전관리계획을 반영하여 수립하고, 방과 후 학교 안전관리 계획은 학교안전계획과 연계하되 별도로 수립한다.

안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학생 관리에 관한 내용을 포함, 학교 구성원들의 역할을 조정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히 한다. 방과 후 학교 강사는 학생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며, 이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계약서에 명기할 수 있다.

방과 후 학교 강사는 학생의 안전을 위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한다.
(지도 강사도 학생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지도・감독 책임을 명시하는 계약)

방과 후 학교 교육활동 시 발생한 사고도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 운영 중에 일어난 사안과 동일하게 처리한다. 방과 후 학교 교육활동도 정규 교육 운영과 동일한 보상이 가능하다.

방과 후 학교 안전관리 계획 수립 시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유의한다.

- 방과 후 학교 안전관리 책임자
- 학생안전 생활지도 계획
- 돌봄 교실 참여 학생의 야간 귀가지도 책임자
- 방과 후 학교 참여 학생 비상 연락망
- 청소년단체, 토요 스포츠클럽, 동아리활동 등 비상연락망

2) 학생관리계획

○ 방과 후 학교 참여 학생 안전 및 시설 관리 요령

수강 학생 보호자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지각, 조퇴, 결석 등 학생 출결 상황을 학부모에게 알림 수 있는 SMS 문자서비스 제공 등의 체계를 구축하여 활용한다.

방과 후 학교 안전관리 책임자는 방과 후 학교 수업 전, 수업 중, 수업 후, 귀가 후 교실 순시를 수시로 실시함으로써 학생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

방과 후 학교 강사는 수업시간 20분 전 입실하여 학생 안전에 관한 사항을 점검한다. 교실 사용 후 창문 및 출입문 잠금장치를 확인하고, 전기 장치 및 냉난방기 확인 후 전원을 차단하여 책임 있는 관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 방과 후 학교 참여 학생 관리 및 하교 지도

방과 후 학교 수업 후 교실에 남아 있는 학생 확인 후 하교 지도를 실시한다. 방과 후 학교 강사는 학생들에 교통규칙 준수 및 안전지도 후 교문 앞까지 동행하여 하교 지도한다.

학생 관리를 위한 상담은 필요 시 교내에서 실시하며, 학교장의 허락 없이 가정 방문 및 학교 밖에서의 학생 지도는 금지된다.

○ 차량을 이용한 학생 이동 시 학생 안전지도

학생 이동용 차량 운행 시 인솔자가 동승하여 지도한다. 연계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한 학생들 차량 탑승 시 담당교사 또는 업무 전담인력, 자원봉사자 등 지역사회의 활용 가능한 인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한다.

학교간・학교급간 연계(공동) 활동 시 계약 차량의 운영이 가능하며, 차량계약 시 반드시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3) 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

○ 안전사고 예방 교육 실시

학생, 교직원, 강사 등 방과 후 학교 실시 직접 관계자의 안전보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며, 교직원,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성폭력) 예방교육계획의 수립 및 교육을 실시한다.

학교폭력, 약물 및 사이버 중독, 가출 등 고위험학생과 부모방치・조손가정,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등 위기학생을 파악하고 이들에 대한 생활지도 계획을 수립한다.

○ 학교 외부인 출입 단속 강화

외부인 출입 시 방문증 패용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무단 외부인 식별, 신고, 단속 등 관리 요령을 숙지한다. 외부강사에게는 외부인과 구분하기 위한 외부강사임을 나타낼 수 있는 표식 또는 명찰을 착용토록 한다.

○ 기타

방과 후 학교 학생 안전관리를 위해 방과 후 학교 강사에 대한 연수를 실시한다. 사안 발생 시 비상연락체계 구성하되, 학교보안관 또는 안전지킴이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유사 시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 방법 마련하고 이에 대한 안내문을 부착하여 유사 시 대처토록 한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처리에 있어서는 사건에 대하여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당사자와 협의토록 한다.

Ⅱ. 교외안전

1. 학생안전지역

학생들의 등·하교 경로에는 다양한 사고 위험이 존재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교통, 식품, 범죄, 환경 영역별로 학교안전구역을 지정하고 있으며, 구역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학교안전구역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활용한 효과적인 등·하교 안전지도 방향을 논의한다.

가. (교통안전)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은「도로교통법」제12조에 근거하여 1995년부터 시행되어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실행되는 구역이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원(100인 이상) 시설의 장이 구역지정을 신청하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학교 주출입구에서 300m범위 내 일정 도로구간에 지정, 500m까지 확장 가능하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보도·차도를 구분하는 것과 함께 횡단보도·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 및

과속방지시설·방호울타리 등 도로부속물을 설치하고 노상주차장은 설치를 금지함으로써 안전한 물리적 교통환경을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차량 통행금지·제한, 주정차 금지, 이면도로 일방통행 운영 등 교통흐름을 규제하고 차량 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하는 등 교통속도 규제도 가능하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등도 시행하며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법규 위반 시 가중 처벌된다. 이와 관련한 사업으로는 통학로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워킹스쿨버스, 교통사고 위험지도 제작 및 배포, 녹색어머니회 교통지도 등이 있다.

나. (식품안전)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은「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제5조 내지 제7조에 근거하여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교육감과 협의하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에 지정하고 있다.

학교 부지 경계선에서 200m 범위 내에서 어린이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중 위생적인 시설기준을 만족하고 고열량·저영양식품을 판매하지 않는 업소를 우수판매업소로 지정이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식품안전지킴이 등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을 모집하여 보호구역내의 위생지도·점검, 고열량·저영양식품/위해식품/정서저해식품 판매에 대한 지도·점검, 교육 및 홍보 등을 시행하고 있다.

다. (범죄안전) 아동보호구역

아동보호구역은「아동복지법」제32조에 근거하여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도시공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시설의 장이 구역지정을 신청하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학교부지 경계선에서 500m 범위 내에서 지정하며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하여야 하며, 아동안전지킴이 등 아동안전보호인력을 배치하여 순찰, 아동지도 등을 시행하며 유괴 등 위험에 처한 아동을 위해 아동긴급보호소의 지정·운영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된 사업으로는「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0조의5에 규정된 학생보호인력으로 배움터지킴이, 학교보안관, 청원경찰, 민간경비(주간) 등이 있다.

라. (환경 안전)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학교보건법」제5조에 근거하여 1967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교육감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안학교, 특수학교 등 모든 학교에 설정·고시한다.

학교 출입문에서 50m까지의 지역은 절대정화구역, 학교 경계선에서 200m까지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은 상대정화구역으로 설정된다.

정화구역 내에서는 학교 주변으로 나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 및 시설 설치는「학교보건법」제6조에 따라 금지되나, 상대정화구역은 심의를 거쳐 이를 해제할 수 있다. 정화구역 내 행위 및 시설에 대해 점검하며 금지시설 등이 있을 경우 조치 및 철거 요청을 하거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표2-3> 학교 주변 안전구역 제도 종합비교

구분	교통	범죄	식품	환경
구역	어린이보호구역	아동보호구역	식품안전보호구역	환경위생정화구역
관계 부처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부
근거법	도로교통법(12)	아동복지법(32)	어린이식생활 특별법(5)	학교보건법(5)
지정 기준	학교주출입문 300~500m	학교경계 500m	학교경계 200m	(절대)학교출입문 50m (상대)학교경계 200m
지정 권자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국가, 지자체	시군구청장	교육감
지정 대상	어.유.초.학원	어.유.초	초.중.고	유.초.중.고.대학
전담 인력	공무원	아동안전 보호인력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공무원
시설 설치	교통안전시설보도, 도로부속물	CCTV	표지판	표지판
행위등 제한	교통규제 주정차・통행금지	-	식품판매 제한	금지 행위・시설 심의해제

2. 교외 학생보호인력

가. 식품안전 보호인력

식품안전 보호구역에서는「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을 지정·운영한다. 전담관리원은 식품안전 보호구역 내 조리·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 조리・판매업소의 식품위생에 관한 지도 및 계몽
- 학교 및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의 고열량・저영양 식품판매 여부 등 확인 점검
- 위해식품 및 정서저해 식품의 판매여부 등 확인 점검
- 조리・판매 및 유통 중인 식품에 대한 수거・검사 지원
- 어린이 식품안전 및 영양 등에 관한 교육・홍보

식품안전 보호인력의 운영을 주관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모집 공고를 통해 학부모를 우선으로 지정하여 인력풀을 구성한다. 시·구 단위 20개 학교당 2명 이상, 군 단위 10개 학교당 2명 이상이 배치되며, 전담관리원(공무원 포함 가능)으로 구성된 2명 1개조가 식품안전보호구역 1곳당 월 2회를 점검한다.

나. 아동안전 보호인력

「아동복지법」제33조 규정에 따라 아동안전 보호인력의 배치·활용이 이 가능하며 '아동안전지킴이' 사업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2013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경찰청으로 이관되어 예산, 인력이 일원화되어 있다.

퇴직경찰, 교사 등 노인전문인력을 아동안전지킴이로 선발하여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주변 통학로, 놀이터, 공원, 유치원 주변 등 아동들의 움직임이 많고 범죄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 위주로 배치되어 활용된다. 아동안전지킴이는 성폭력, 학교폭력, 실종, 유괴 등 아동 대상 범죄예방을 위해 순찰, 아동지도, 위험에 처한 아동의 일시보호 등의 활동을 한다.

이 사업을 주관하는 경찰청은 재향경우회, 대한노인회와의 협약을 통해 이 단체에서 회원 중 건강상태가 양호한 75세 이하 노인들로 인력풀을 구성토록 한다.

아동안전지킴이는 아동 범죄 발생 우려가 높은 초등학교 주변에 우선 배치되며, 재향경우회·대한노인회 각 1인씩 2인 1조로 구성되며, 지구대·파출소 단위로 운영된다.

활동시간은 평일 14시부터 18시까지(동절기 13:00~17:00) 4시간 활동을 원칙으로 하며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3. 등·하교

학생들의 등·하교길은 위험 요인이 항상 존재하며, 이러한 위험요인은 앞서 살펴 본 교통, 식품, 범죄, 환경의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교사는 학교 주변의 4개 학교안전구역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인식한 후 학생들에게 학교안전구역별 위험 요인들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학생들의 위험 인식 제고를 위해 학교 주변 안전 맵 만들기를 해보거나, 학교에서 학교 주변 안전 맵을 만들어 학생과 학부모에게 이를 배포하여 학교 주변 위험요인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갖도록 지도하는 것도 바람직한 교육방법이다.

4. 현장 체험 활동 안전 대책

수학여행, 야외 체험학습, 자유학기제에 따른 활동 등 현장체험학습은 학교 밖에서 실시되기 때문에 학생들의 긴장이 이완되고, 교사의 임장 지도의 한계로 인해 안전사고의 위험이 학교 교내활동보다 증대되는 데에 문제가 있다.

현장체험학습은 학교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학교 교육계획에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계획 수립 시에는 철저한 사전 위험 점검과 교육을 통해 학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현장체험학습 출발 전 주의사항

1) 계획 수립단계

관련 법규 및 교육부와 교육청 정책에 부합하도록 현장체험학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계획을 수립・시행함에 학생 안전관리 및 생활지도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체험활동을 청소년 유해환경 밀집지역 및 안전취약 지역에서 실시하는 것은 교육적 측면에서도 학생안전의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곳에서의 체험활동은 금지된다.

국외 여행 시 국외 여행자 보험에 가입을 함으로써 안전사고 발생 시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아울러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현장체험학습 불참하는 학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불참 학생 지도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지도한다.

현장체험학습을 청소년수련시설에 위탁할 경우 학교안전법 제8조의2제2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이 인증을 받은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6조)을 실시하는지의 여부와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실시, 종합평가 결과 및 이에 따른 개선조치 이행(같은 법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 및 제19조의2) 등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교육부 지침에 의할 경우 수학여행·수련활동・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은 현장답사를 해야 한다. 계약 전과 체험학습 실시 전 2회의 현장답사를 실시하되 시기, 방법, 대상 등은 당해 계약 방식 및 학교 사정 등을 고려하여 추진한다. 학생 150명 이상의 대규모 수학여행을 실시할 경우, 학생 50명당 1인

이상의 안전교육을 이수한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중 · 소규모는 인력확보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배치한다.

2) 수련 및 숙박시설

식재료 구매, 조리, 배식 과정에서 위생관리와 식수 제공 시 끓인 물, 생수 등 검증된 식수 제공여부를 확인한다. 가급적 익혀서 제공되는 식품으로 식단이 구성되었는지를 확인한다.

도시락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위생안전이 검증된 업체를 이용한다. 단체로 제공된 식사는 반드시 '1인분'을 보존식으로 보관함으로써 식중독 등 발생 시 역학조사의 증거자료로 활용토록 한다.

숙박시설의 침대, 난간, 계단, 복도 등 시설이 안전한지를 확인하고 숙박시설의 베란다 및 창문을 넘나들 수 없게 조치했는지를 점검한다.

사전에 관할 시군구에 일정을 통보해 위생·안전 점검을 요청하고 인근에 유해환경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3) 출발 전 안전사고 예방조치

출발 전 이동 시각 및 경유지·목적지 등을 정확하게 숙지하여 행렬에서 이탈해도 인솔자의 휴대전화 등을 통하여 경유지 또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을 마련한다.

출발 전 안전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를 작성하고, 학생들이 주류나 화기물질을 반입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운송업체 계약서 및 입찰공고문 등에 운전자 음주 금지조항 및 보상 조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서상의 차량번호와 배치된 차량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학교에서는 교통안전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팩스로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를 조회 요청하고, 해당학교 관할 경찰서로는 학생 수송버스 호송 협조(음주측정 등)를 공문으로 요청한다.

나. 현장체험학습 시 주의사항

1) 교사

활동 전 과정에서 안전 및 생활지도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 인솔 및 지도교사는 수련관련 각종 시설물에 대한 사전점검을 철저히 하여 각종 안전장비의 비치여부, 안전요원 배치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한다. 학교에서는 수학여행, 수련활동 실시 전에 지참금지 물품을 학부모와 학생에게 알리고, 지참하지 않도록 특별지도를 실시한다. 학생의 안전사고 발생 시 인솔교사와 담임교사에게 반드시 보고하도록 사전에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기간 중 사전 계획에 따라 교육활동을 총괄하고 지도교사 간 긴밀한 연락체계를 유지하여 교육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인솔 및 지도교사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사시간을 포함한 각종 교육활동에 반드시 참여하여,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고 각종 사고 예방에 주력한다.

인솔책임자는 교육활동에 필요한 교육자료 및 유사시 필요한 구급약품 등을 준비하고 이를 각 차량마다 부착한다. 인솔교사는 운전자와 가까운 자리에 탑승하여 과속방지, 안전거리 확보 등 운전자의 준법 및 안전 운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언하고, 탑승 학생이 안전 운행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교통안전지도, 수상안전지도, 화재예방지도, 위험시설 및 위험 환경으로부터 안전지도, 질병예방지도, 성폭행·성희롱 및 성매매 예방지도, 소지금지 물품 휴대상황 등을 수시로 점검한다. 돌발적인 재난 및 교통사고를 비롯한 안전사고 등이 발생한 때에는 사고자에 대한 응급처치와 안전지대로 대피토록 한다.

2) 학생

교육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여 심신 수련에 최선을 다하며, 인솔 교사와 프로그램 진행자의 안전지도 사항을 성실히 준수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체험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인솔교사의 허락을 받도록 한다.

다중 이용 시설(숙소, 식당, 버스터미널, 지하철, 공항 등)에서는 공중도덕을 준수하고 교육활동 중 유해한 장소나 위험한 시설 등에 접근하지 않도록 한다.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인솔지도 교사에게 즉시 보고한다.

차량 운행 시에는 운전자의 안전운행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탑승 중에는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토록 한다. 항공기 탑승 시에는 '기내반입 금지물품(문구용 칼, 가위, 폭발성 물질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소지하지 않도록 한다.

5. 놀이안전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 야외 체험활동 증가 등의 정부시책에 따라 학생들의 학교 밖 스포츠 활동이 증가함에 따른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안전사고의 특징은 학생 본인뿐만 아니라 제3자인 민간인, 특히 노인이나 어린이 등과의 충돌로 인한 골절, 뇌진탕 등의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기도 한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학교배상책임공제의 제3자 피해 보상청구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제3자 피해는 교육활동으로 인한 학생의 피해보다 법률관계가 복잡해지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놀이활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놀이별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놀이활동에 적합하고 안전한 장소를 확보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예방하는데 있다. 놀이활동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준비운동을 실시한 후 보호 장비를 미리 착용하여 안전을 확보토록 한다.

가. 자전거, 인라인 등 이동기구 타기

이동수단만이 아닌 여가나 스포츠활동 수단으로 자전거 이용자수가 증가함에 따른 자전거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규모가 2014년도 한해 동안 사망 289명, 부상 18,115건으로 심각한 실정이고, 고가의 자전거가 많아짐에 따라 물적 피해도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도로교통법상 '차車'에 해당하는 자전거는 이용의 편리함의 반대급부로 위험성도 함께 가지고 있는 이동수단이다.

자전거로 인한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자전거 전용 도로, 공원, 놀이터, 학교 운동장이나 공설운동장 등의 안전한 장소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자전거를 딸태는 반드시 안전모와 보호장구를 착용토록 해야 하며, 운전 중에는 과도한 핸들조작이나 과속을 하지 않고 전방을 주시토록 함으로써 만일의 위험에 대비토록 하여야 한다.

인라인 스케이트나 킥보드와 같이 빠르게 움직이는 놀이기구 역시 전용공간이나 놀이터, 학교 운동장 등 안전한 공간에서 타야 한다. 차가 다니는 도로나 주차장, 골목길, 공사장 부근이나 보행자 통행이 잦은 곳은 자동차나 보행자와 충돌 위험이 있으므로 피해야 한다. 이들 기구도 안전모와 보호대를 반드시 착용토록 지도하고 적절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지도가 필요하다.

나. 물놀이 및 수상레포츠 안전

물놀이 안전은 야외 놀이활동 중 가장 주의를 요하는 영역이다. 물놀이 중 안전사고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와 지도가 필요하다.

교사는 학생들의 물놀이 장소의 안전성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점검을 하고 물놀이 활동 중에는 물놀이 장소에 배치된 안전요원과 함께 학생들의 움직임을 세심하게 관찰하여야 한다. 적정 수용인원이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움직임이 감독자의 시야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세부적인 물놀이와 수상레포츠 안전수칙은 교육부와 교육청의 안전매뉴얼을 참고할 것을 권장하고 여기서는 물놀이 안전 10대 수칙을 소개한다.

<표2-4> 물놀이 안전 10대 수칙

① 수영하기 전에는 손, 발 등의 경련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준비 운동을 하고 구명조끼를 착용한다.
② 물에 처음 들어가기 전 심장에서 먼 부분부터(다리, 팔, 얼굴, 가슴 등의 순서) 물을 적신 후 들어간다.
③ 수영도중 몸에 소름이 돋고 피부가 당겨질 때에는 몸을 따뜻하게 감싸고 휴식을 취한다.
④ 물의 깊이는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갑자기 깊어지는 곳은 특히 위험하다.
⑤ 구조 경험이 없는 사람은 안전구조 이전에 무모한 구조를 삼가야 한다.
⑥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주위에 소리쳐 알리고(즉시 119에 신고) 구조에 자신이 없으면 함부로 물속에 뛰어 들지 않는다.
⑦ 수영에 자신이 있더라도 가급적 주위의 물건들(튜브, 스티로폼, 장대 등)을 이용한 안전구조를 한다.
⑧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때나, 몹시 배가 고프거나 식사 후에는 수영을 하지 않는다.
⑨ 자신의 수영능력을 과신하여 무리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⑩ 장시간 계속 수영하지 않으며, 호수나 강에서는 혼자 수영하지 않는다.

3) 안전약자(요양호자) 안전지도

1. 요보호학생의 개념

요보호학생이란 신체적·정신적 건강상의 이유로 일반 학생들과 달리 교사의 세심한 관찰과 관리가 필요한 학생을 말한다.

이들 학생들은 선·후천적인 지병을 보유하고 있거나, 정신적인 병적 소인이 있어 이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을 경우 요보호학생의 예상치 못한 발병, 발작 등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요보호학생을 포함한 학생들의 원만한 학교생활을 위해서도 별도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2. 요보호학생 보호업무

신학기 건강실태조사를 통해 건강문제를 가진 학생을 파악하고 개별면담과 정기적인 건강상담을 통해 요보호학생이 학교생활을 안전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응급상황발생을 예방하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학교 차원의 안전관리를 위해 **전체 교직원에게 요보호 학생 명단을 배부**하는 것과 함께 학생 주요 건강이상 사항, 유의하여 관찰을 요하는 사항, 담당교사 조언 등에 관한 정보를 수시로 공유하면서 건강이상 학생에 대한 보호를 철저히 한다.

요보호학생 기록은 인권을 보호하면서도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보관·관리토록 한다. 기록지에는 전화번호, 지정병원·투약정보 등 의료 정보, 기타 유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교직원은 요보호학생의 개인 신상, 병력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보안관리**가 필요하다.

3. 요보호학생 관리계획 및 상담지도

각반 요보호자 명단을 전체 교사의 교무수첩 기재, 교내 전산망을 통한 자료 공유 및 교사 연수 시 안내 등을 통해 요보호학생 안전지도에 만전을 기한다. 학년 초에 확인되지 않은 경우나 현재 이후에 발병한 환자에 대해서는 추가로 명단을 파악하여 관리한다.

신체적 결함 때문에 심리적으로 손상을 받기 쉬운 상태이므로 급우들에게 장애에 대해 설명을 하여, 놀리거나 곤경에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하고,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급우들에 대한 설명과 도움 요청은 요보호학생의 부모가 공개를 승인한 경우에 한한다.

감수성이 민감한 시기이므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요보호학생에 대한 이해와 따뜻한 사랑으로 대해 주어야 한다. 체육, 외부 체험활동 등 활동량이 많은 시간에 특히 세심한 관찰과 주의가 필요하고, 보건교육을 통하여 사고 방지, 시력 보호, 예방접종 등의 필요성을 가르쳐준다.

학부모, 담임교사, 보건교사와 수시면담을 통하여 학생의 건강상태나 심리상태를 파악하여 관리한다. 의학적 치료를 하지 않는 학습 장애, 언어 장애나, 정신적 문제를 가진 학생의 경우는 상담교사와 협조하여 학교 적응 등의 전문 상담을 실시한다.

계속적인 추후관리를 실시하여 건전한 학교생활 속에서 스스로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표를 둔다. 비상시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요보호학생의 연락처 변경 시 보건실로 통보한다. 응급상황 시 요보호학생이 주로 이용하는 병·의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4) 학교 안전 관련 학부모 연계

○ 학기 초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다음 사항들을 학부모에게 안내하여 학교안전 관련 인식 개선과 적극적인 참여 유도

- 연간 안전관리계획 통지
- 각종 안전 업무 관련 학부모 자원봉사자 모집
- 건강 이상 학생 학교 통보, 안전사고 보상제도 통지 등

나. 안전사고 관리 및 재난 대응

1) 안전사고 관리 지침

○ 별도 2023 재난 대응 훈련 계획 수립에 반영

2) 재난 대응 지침

○ 별도 2023 재난 대응 훈련 계획 수립에 반영

2. 학교 안전교육의 내실화

가. 학생 대상 안전교육 실시계획

1)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

○ 반영시간: 교과 연계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51시간 이상 운영

○ 학교안전교육 7대 표준안 주요 내용 및 적용 시수

영역	활동내용	시수	횟수
1. 생활안전 교육	• 안전하게 교실, 가정 및 공공시설 이용하기 • 학용품 놀이용품의 안전한 사용 및 식품 안전 알기 • 안전한 놀이활동 및 야외활동 • 유괴예방, 미아사고 예방과 대처	8	학기당 2회 이상
2. 교통안전 교육	• 안전한 통학로 알기 • 교통수단(자전거, 대중교통 등)의 안전한 이용법 알기 • 교통 표지판 등 도로 교통 법규 알기	8	학기당 2회 이상
3. 폭력예방 및 신변 보호 교육	•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처법 알기 • 학교폭력의 종류를 알고, 종류별 예방법 알기 • 성폭력예방 및 대처방안 알기 • 내 몸의 소중함을 알기 • 아동학대의 유형 및 대처방안 알기 • 가족폭력의 개념과 대처방안 알기	5	학기당 1회 이상
4.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 교육	• 약물 오남용의 위험성 및 올바른 약물 복용법 알기 • 중독성 물질을 알고 안전한 활용 방법 알기 • 건전한 사이버 통제 능력 배양 및 사용습관 형성하기	5	학기당 2회 이상
5. 재난안전 교육	• 화재의 원인 및 대피요령, 신고, 전파요령 알기 • 화상 대처 요령 알기 • 각종 자연 재난과 안전한 행동 알기 • 폭발 및 붕괴, 테러 위협 유형별 대처 요령 알기	5	학기당 1회 이상
6. 직업안전 교육	• 일터에서 발생하는 산업 재해를 알기 • 일터 안전시설 현장 체험하기	1	2학기 1회 실시
7. 응급처치 교육	• 응급처치의 상황, 의미, 중요성, 신고조치 방법 알기 •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의 사용법 알기 • 상처의 종류와 응급처치하기 • 일상생활 속 응급처치 알기	1	1학기 1회 실시
총 시수		51	

2) 교과 연계 안전교육(코로나-19로 변동 가능)

○ 생활 안전 교육

학년	교과	단원명	수업내용	시기	차시
1	기술·가정	창의적인 생활 문화	청소년 식생활 문제 포스터 제작	5월	2
		안전한 생활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 방법 알기	8월	2
	체육	플라잉디스크	스포츠 시설 및 장비 안전 수칙	4월	2
		건강과 안전의 이해 및 실천	스포츠를 안전하게 관람하는 방법	11월	2
2	기술·가정	합리적인 자원 관리	청결한 의복 세탁 방법 실천하기	4월	2
		효율적인 이동을 위한 기술	수송 기술의 안전한 이용 역할극	10월	2
	체육	네트형 경쟁(배드민턴)	안전한 장비 사용 및 스포츠 관람 수칙	4월	2
		영역형 경쟁(티볼)	안전한 스포츠 활동 규칙 익히기	9월	2
3	기술·가정	효율적인 이동을 위한 기술	수송 기술의 안전한 이용 역할극	7월	2
		안전한 생활	안전한 식품 관리법 탐구	11월	2
	체육	네트형 경쟁(농구)	스포츠 시설 및 장비 안전 수칙	4월	2
		네트형 경쟁(배구)	위급 상황에서 지켜야 할 3단계 요령	9월	2
학년별	총 8차시, 4회				

○ 교통안전 교육

학년	교과	단원	수업내용	시기	차시
전체	나침반 안전교육			조회, 중식	10
1	체육	플라잉디스크	자전거 및 교통안전 지키기	6월	1
2	체육	네트형 경쟁(배드민턴)	자전거 및 교통안전 지키기	4월	1
3	체육	네트형 경쟁(농구)	자전거 및 교통안전 지키기	5월	1
학년별	총 11차시, 3회				

○ 폭력 및 신변보호 교육

학년	교육내용	교과	단원	수업내용	시기	차시
1	학교폭력예방 (학기별 1회, 2시간 이상)	창체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		3월	1
			어울림 교육		5월	1
			학교폭력 예방		8월	1
		사회	대중매체와 대중문화	폭력의 종류와 대처법	10월	2
	성폭력 및 아동학대예방 (연간 8시간 이상)	창체	성폭력·성희롱 예방		4월	1
		사회	사회화와 청소년기	성폭력 예방	7월	2
			사회 집단	아동 학대 예방	12월	2
		기술·가정	자주적인 삶을 위한 나의 발달	성범죄 예방	4월	2
			안전한 생활	아동 학대 예방	8월	2
	가정폭력예방 (연간 1시간 이상)	도덕	타인과의 관계	가정에서 세대 간 대화 소통	7월	1
	실종·유괴예방 (연간 10시간, 3개월에 1회 이상)	국어	요약과 판단	실종·유괴 사건 관련 글 읽기	4월	2
			문학과 성찰	실종·유괴 사건을 소재로 한 문학 작품 감상	10월	3
		영어	Walk Around Your Town	유괴·유인 상황 대처법 및 신고요령	7월	2
			Give Your Hand, Give Your Heart	가출의 위험성 알리기	12월	3
2	학교폭력예방 (학기별 1회, 2시간 이상)	창체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		3월	1
			어울림 교육		5월	1
			학교폭력 예방		8월	1
		도덕	통일윤리의식	폭력의 종류와 대처법	10월	2
	성폭력 및 아동학대예방 (연간 8시간 이상)	창체	성폭력·성희롱 예방		4월	1
		도덕	사회정의	성폭력 예방	7월	2
			과학과 윤리	아동 학대 예방	12월	2
		기술·가정	합리적인 자원 관리	성범죄 예방	4월	2
			건강한 가족 관계	아동 학대 예방	9월	2
	가정폭력예방 (연간 1시간 이상)	도덕	폭력의 문제	가정폭력 대응 요령	4월	1
	실종·유괴예방 (연간 10시간, 3개월에 1회 이상)	국어	독서와 발표	실종·유괴 사건 기사문 읽기	4월	2
			한글과 국어생활	실종·유괴 예방 홍보물 제작	10월	1
		영어	Connecting with the World	유괴·유인 상황 대처법 및 신고요령	7월	2
			A Life Full of Fun	가출의 위험성 알리기	10월	3

3	학교폭력예방 (학기별 1회, 2시간 이상)	창체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		3월	1
			어울림 교육		5월	1
			학교폭력 예방		8월	1
		사회	도시문제	폭력의 종류와 대처법	10월	2
	성폭력 및 아동학대예방 (연간 8시간 이상)	창체	성폭력·성희롱 예방		4월	1
		사회	국가 간 갈등문제	성폭력 예방	7월	2
			지구상의 지리적 문제	아동 학대 예방	12월	2
		기술·가정	미래를 위한 생애 설계	아동 학대 예방	4월	2
			안전한 생활	성범죄 예방	10월	2
	가정폭력예방 (연간 1시간 이상)	국어	관점과 해석	동일한 가정폭력 사안에 대해 해석이 서로 다른 글 읽기	4월	1
	실종·유괴예방 (연간 10시간, 3개월에 1회 이상)	국어	문학과 소통	실종·유괴를 소재로 한 작품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글로 형상화하기	4월	2
			점검과 조정	실종·유괴사건을 다룬 영화를 보고 자신의 생각을 자신있게 말하기	10월	3
		영어	Connecting with the World	유괴·유인 상황 대처법 및 신고요령	7월	2
			A Life Full of Fun	가출의 위험성 알리기	10월	3
학년별	총 25차시, 14회					

○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교육

학년	교육내용	교과	단원	수업내용	시기	차시
1	감염병및약물의 오용·남용·예방 등 보건위생관리 (3개월 1회, 연간10시간이상)	수학	수와 연산	감염병 예방 교육	3월	3
			통계	약물의 오남용 예방 교육	9월	2
		과학	소중한 생물의 다양성	약물 중독 치료 방법	6월	3
			빛	약물과 생물 다양성	12월	2
2	감염병및약물의 오용·남용·예방 등 보건위생관리 (3개월 1회, 연간10시간이상)	수학	수와 식	감염병 예방 교육	3월	3
			도형의 성질	약물의 오남용 예방 교육	9월	2
		과학	태양계의 구성	약물의 구성 물질 및 예방 교육	4월	3
			물질의 특성	약물의 위험성 및 예방 방법	10월	2
3	감염병및약물의 오용·남용·예방 등 보건위생관리 (3개월 1회, 연간10시간이상)	수학	실수와 그 계산	감염병 예방 교육	3월	3
			삼각비	약물의 오남용 예방 교육	9월	2
		과학	화학 반응의 규칙과 에너지 변화	감염병 예방 교육	6월	3
			별과 우주	약물의 위험성 교육	12월	2
학년별	총 10차시, 4회					

○ 재난 안전 교육

학년	교과	단원	수업내용	시기	차시
1	과학	지권의 운동	폭발 및 붕괴	4월	2
		기체 입자의 운동	자연 재난과 안전 생활	8월	2

	체육	건강과 안전의 이해 및 실천	화재 대피 및 화상 치료	10월	2
2	과학	전기와 자기	감전 대처 교육	6월	2
		수권과 해수의 순환	자연 재난과 안전 생활	9월	2
	체육	스포츠 환경 안전	화재 대피 및 화상 치료	10월	2
3	과학	과학기술과 인류문명	재난대비 용품 고안	7월	2
		별과 우주	재난 예방교육	12월	2
	체육	여가 스포츠 안전	화재 대피 및 화상 치료	10월	2
학년별	총 6차시, 3회				

○ 직업 안전 교육

학년	교과	단원	수업내용	시기	차시
1	기술·가정	창의적인 생활 문화	직업 안전 교육	9월	1
2	기술·가정	효율적인 이동을 위한 기술	올바른 수송 수단 이용법 알기	10월	1
3	기술·가정	효율적인 이동을 위한 기술	바람직한 수송 수단 조작법 알기	11월	1
학년별	총 1차시, 1회				

○ 응급처치 교육

학년	교과	단원	수업내용	시기	차시
1	체육	건강과 체력평가(줄넘기)	사고 예방과 심폐소생술 교육	9월	1
2	체육	네트형 경쟁(배드민턴)	운동 손상 시 응급처치 방법	5월	1
3	체육	네트형 경쟁(배구)	응급구조 및 심폐소생술 교육	4월	1
학년별	총 1차시, 1회				

3) 창의적 체험활동 연계 안전교육

1학기				2학기			
날짜	학년	시수	활동내용	날짜	학년	시수	활동내용
3.2	1, 2, 3	1	학교폭력예방	7.6	1, 2, 3	1	인테넷중독및 사이버폭력예방
5.11	1, 2, 3	1	학교폭력예방	1.12	1, 2, 3	1	인테넷중독및 사이버폭력예방
계	1, 2, 3학년 2시간			계	1, 2, 3학년 2시간		

4) 나침반 5분 안전교육

○ 별도 <2023 나침반 5분 안전 교육 운영 계획> 수립 및 실시

○ 학생 참여형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여형 나침반 안전교육 자료도 활용

5) 외부 체험활동을 통한 안전교육

○ 별도 <2023 현장체험학습 운영 계획>에 수립

나. 교직원 대상 안전교육 실시 계획

1) 2023년도 교직원 대상 안전교육

○ 교직원 안전교육 직무연수 이수 계획

구분	총 교직원 수(명)			안전관련 전문교육(15시간) 이수 대상 예정자			
	교원	직원	계 (A)	교원	직원	계 (B)	이수율 (B/A)×100
인원	91	23	114	91	23	114	100

○ 2023년 교직원 심폐소생술 교육 이수 계획

교육대상 인원수(명)				교육실시 인원 수(명)				실시비율(%)	
학생 (A)	교직원 수			학생 (C)	교직원 수			학생 (C/A)	교직원 (D/B)
	교원	직원	소계 (B)		교원	직원	소계 (D)		
1432	91	23	1,546	1432	91	23	1,546	100	100

2) 2023년도 교직원 대상 안전교육 계획

○ 교직원은 2021.3.1.~2024.2.28 3년 간 15시간 이상의 안전교육 연수 이수토록 안내 (단, 3년 미만의 계약을 체결하여 종사하는 자는 매 학기 2시간 이상을 이수하고, 교육활동 참여자는 연간 1회 이상 이수하도록 함.)

○ 학기 당 1회 안전교육 연수 이수 여부를 조사하여 실적 보고

다. 재난 대피 훈련 연간 계획

1) 별도 <2023 재난대피 훈련 운영 계획> 수립 및 실시

2) 재난 대피 훈련 연간 계획(코로나-19로 변동 가능)

일정	훈련명	훈련유형	대상	담당자	비고
3월	연간 훈련계획 설명회	토론기반훈련	학생회		
	감염병(코로나-19) 예방 훈련	전달연수	모든 교직원과 학생		
4월	황사・미세먼지 훈련	전달연수	학교장 및 담당 교직원		
	실험・실습안전 훈련	토론기반훈련	학교장 및 담당 교직원		
5월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화재)	현장훈련	모든 교직원과 학생		CPR
9월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지진)	현장훈련	모든 교직원과 학생		합동
10월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테러)	현장훈련	모든 교직원과 학생		CPR

라. 학교 안전주간 운영계획

○ 별도 <2023 학교 안전주간 운영 계획> 수립 및 실시

○ 학생 참여형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생 주도 캠페인 실시

3. 학교 시설 안전 점검 · 관리 · 조치

가. 학교 시설 안전 점검

1) 매월 안전 점검의 날

○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6,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6

○ 관할 시도 교육청 지침에 따라 점검 실시

2) 해빙기, 여름철, 겨울철 안전 점검

○ 관할 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라 점검 실시

나. 학교 시설 안전 관리 및 조치

1)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에 따른 관리 및 조치

○ 근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조

○ 2023 상반기 : 학교시설 안전관리 담당자 점검 원격연수 및 행정조치 전달연수

○ 2023 하반기 : 학교시설 안전관리기준에 따른 시설 점검 실시 및 결과보고

2) 개별 법령에 의한 학교시설물 관리

구분	관계법령	주요내용
건축	건축법	◦ 건축허가 및 신고대상 공사 설계도서 건축사 작성(제23조) ◦ 건축허가 대상 공사의 건축사 감리 지정여부(동법 시행령 제19조) ◦ 철거예정 7일전 시장군수 구청장 신고(제36조) ◦ 건축물 철거 후 멸실 신고(제36조) ◦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 철거의 경우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제거 및 결과의 기록 보관 (제36조)
전기	전기사업법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제73조) ◦ 전기안전관리자의 정기점검* 실시(제65조) *매월 1회 이상, 용량별로 월 3회 이상
도시가스	도시가스 사업법	◦ 안전관리자 선임(제29조) ◦ 도시가스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제30조) ◦ 점검기관(가스안전공사 등)으로부터 연 1회 이상 정기검사(제17조)
승강기	승강기 안전관리법	◦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및 승강기관리교육*(제16조) *승강기안전관리자가 지정 3개월 이내 교육이수 ◦ 월1회 자체점검 실시 후 점검기록부 보관(제17조) ◦ 연1회 이상 정기검사 및 정기정밀점검*(제13조)

구분	관계법령	주요내용
		*설치 후 15년 이상된 승강기 및 중대한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된 승강기 대상
수도시설	수도법	◦ 수도시설에 절수설비 설치(제15조) ◦ 저수조 청소*실시, 위생상태 점검** 기록보관 및 수질검사***(제33조) *반기1회 이상, **월1회 이상, ***연1회 이상 ◦ 수도관리자 교육(제36조) ※ 1년내 8시간의 집합교육 및 이에 상응하는 인터넷교육
하수도시설	하수도법	◦ 정화조 내부청소* 연1회 이상 실시(제33조) *침전찌꺼기와 부유물질 등 제거
장애인편의시설	장애인 노인임산부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 장애인 노인임산부 등 최단거리 이동편의시설 설치(제3조)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정(제17조) ◦ 장애인 접근로 적정 설치(동법 시행령 제4조) - 주출입구에 휠체어 통행용이 및 출입문 시설 - 장애인 복도 통행에 지장 없는 관리 - 장애인용 계단 또는 승강설비 적정 설치 - 장애인용 대.소변기 설치 - 점자블럭,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구비
소방시설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관리(법 제10조) ※ 시설폐쇄, 훼손여부 및 주위 장애 사항 등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규정 제5조) ◦ 자위소방대 편성・운영(규정 제12조) ◦ 소방안전교육과 훈련 실시(규정 제14조) ※ 연2회 이상 실시 중 1회는 소방서와 합동 훈련 ◦ 자체점검계획 수립 및 자체점검(월1회 이상), 기록보관(규정 제15조) ◦ 소방종합정밀점검(연1회 이상) - 소방서장 보고(법 제19조) ◦ 각실 책임자의 화기단속 및 예방 조치(규정 제9조)
석면	석면안전관리법	◦ 학교시설 석면조사 실시 및 결과 보관(제21조) ◦ 석면조사결과 보고 - 교육감(제22조) ◦ 석면안전관리자 지정 보고 - 교육감(제23조) ◦ 석면안전관리자 안전관리 교육(제24조) ※ 관리자 신고 후 1년이내 6시간 이상
급식시설	학교급식법 시행령	◦ 안전한 조리기기, 냉장・냉동시설, 세척・소독시설 구비(제7조) ◦ 급식관리실에 필요한 사무장비 구비(제7조) ◦ 조리종사원 숫자에 맞는 휴게시설 구비(제7조) ◦ 급식시설 설치 시 기준*에 따라 시설설비 구비(시행규칙 제3조) * 시행규칙 제3조 별표 1 시설설비 기준
어린이 놀이시설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 안전검사기관 정기시설검사(2년 1회 이상) 결과 표시(제12조) ◦ 자체안전점검 월1회 이상 실시(제15조) ◦ 3년간 안전진단실시결과 기록보관(제17조) ◦ 놀이시설 안전관리담당자 안전교육 실시(제20조) ※ 2년 1회 이상, 1회 안전교육 4시간 이상 ◦ 어린이 놀이시설 보험가입(제21조) ◦ 어린이 놀이시설 사용금지의 경우 관리감독기관에 통보(제16조) ◦ 어린이 놀이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적합(제11조)

구분	관계법령	주요내용
외부인 출입	초중등교육법	◦ 외부인 출입, 학교폭력예방 학생안전대책 수립(제30조)
학교보건	학교보건법	◦ 보건실 66㎡이상 확보 및 세부기준 적합여부(제3조 및 시행규칙 제2조) ◦ 학생안전교육, 학교 시설·장비의 점검 및 개선 조치(제12조) ◦ 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제4조) ◦ 학교 환경위생담당자 지정·관리(규칙 제3조) - 교내 환기·채광·조명·온습도의 조절기준과 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 관리 - 상하수도·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 폐기물 및 소음의 예방 및 처리기준 - 교사 안에서의 공기의 질에 대한 유지 - 식기·식품·먹는 물의 관리 등 식품위생 관리
공사발주	산업안전 보건법	◦ 공사 발주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제30조) ◦ 석면 해체 시 등록업체(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 해체·제거(제38조)
시설사업 촉진	시설사업 촉진법	◦ 학교신설, 학교용지 변경시 교육청에 사업시행계획 승인(제4조) ◦ 학교용지 내 시설물 증축, 대수선의 경우 교육청 건축승인(제5조) ◦ 시설사업 종료 후 7일 이내 교육청 신고 및 건축물 사용승인(제18조)
폐기물 관리	폐기물관리법	◦ 생활폐기물의 종류, 성질, 상태별 분리보관(제15조) ◦ 사업장 폐기물의 전문업체 위탁 처리 여부(제15조)
하수도	하수도법	◦ 학교 내 하수 및 배수관 신설의 경우 공공하수도 유입(제27조) - 교내 오수 배출 건물 증축 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제34조) *정화조 등의 시설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제37조), 개인하수처리시설 기준*의 의한 설치(제24조) *하수처리구역안 정화조설치, 하수처리 구역 밖 1일 오수처리량 2㎥이상 오수처리 장치 연결, 그 이하 정화조 설치

4. 학교안전 문화 확산

가. 안전 업무 관련 교직원 간 협력 체계구축

1) 안전 가치의 최우선적 인식 문화 확산

○ 학교 안전의 가치는 안정적 교육활동 수행의 기본 전제가 되므로 제반 교육활동 계획 수립부터 실시에 이르기까지 최우선적으로 학교 안전의 가치를 고려하는 학교문화 만들기

2) 안전 업무 관련 교직원 간 역할 명료화

○ 학교장은 학교안전 관련 업무에 대한 교원과 직원의 역할과 임무를 명확히 설정

○ 학교 구성원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안전한 교육활동이 되도록 적극 노력

나. 학교안전 자가점검표

1) 학교안전 자가점검표 작성

기본계획 각호	법제도	세부점검내용	전년도 추진실적			계획수립	
			○	△	×	○	×
1. 예방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기본계획, 지역계획, 학교계획	학교계획 수립 시 안전담당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직원들이 함께 참여하였는가?	✓			✓	
		학교계획에서 안전업무와 관련하여 관련 교직원들의 역할과 책임에 대하여 명확히 기술하였는가?	✓			✓	
		학교안전계획의 취지와 목표를 학교실정에 맞게 적절히 설정하였는가?	✓			✓	
		우리 학교는 학교와 주변지역의 위험성을 파악한 후, 이에 적합한 학교안전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	
		학교안전계획은 교직원들 간에 명확히 공유되었는가?	✓			✓	
		안전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원(시간, 정보, 인원, 예산 등)과 수행 절차는 파악되었는가?	✓			✓	
2. 교육활동 운영의 기본지침	학사일정별 학교안전	학사일정별 연간 안전관리계획은 각 계절별 재난요소를 적절히 고려하였는가?	✓			✓	
		체험과 실습 중심의 안전교육을 계획하였는가?	✓			✓	
		안전학습 관련 컨텐츠는 적절하고 풍부하게 준비하였는가?	✓			✓	
		시기, 활동, 행사별로 발생하기 쉬운 사고나 취약학생 혹은 구역을 파악하여 예방조치를 할 계획을 세웠는가?	✓			✓	
	외부체험활동 안전	현장체험학습 계획 시 현장체험학습 매뉴얼 사항들을 교사들에게 공지하고, 계획에 게재하였는가?	✓			✓	
	학교주변 안전관리	학교안전의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 유관기관지자체, 소방서, 경찰서등) 간 협력 계획이 마련되었는가?	✓			✓	
		스쿨존 정비 방법은 마련되었는가?	✓			✓	
	안전약자 안전대책	요양호자(안전약자)를 파악하고, 안전약자 안전대책에 따를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	
3. 학교안전교육	예방 및 학교안전교육	안전교육 연간 계획표에서 학교와 학교 주변에 존재하는 위험요인들에 대한 정보를 교육 계획에 포함시켰는가?		✓		✓	
		안전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배려도 교육에 포함 시켰는가?	✓			✓	
		학생 참여형 안전교육을 준비했는가?	✓			✓	
		안전교육 교사연수 연간계획은 준비 되었는가?	✓			✓	
		안전사고 유형별 교육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			✓	
		교과 연계 방법이 수립되었는가?	✓			✓	
		안전 전문가 초빙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			✓	
	정기훈련	학교구성원 모두 체험할 수 있는 훈련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	
		훈련은 구체적 목표 및 평가 방법을 가지고 있는가?	✓			✓	

기본계획 각호	법제도	세부점검내용	전년도 추진실적			계획수립	
			○	△	×	○	×
		훈련은 체험형・토의형으로 수립하였는가?		✓		✓	
		학교에서 일어날 위험이 높은 재난 유형을 고려하여 재난대비훈련을 계획했는가?	✓			✓	
		심폐소생술의 이론과 방법에 대한 교육과 훈련 계획이 수립되었는가?	✓			✓	
		안전약자를 포함한 훈련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	
4. 학교시설 안전점검·관리 및 안전조치	매월 안전점검의 날(제6조)	매월 안전점검의 날 <별첨10>에 따른 학교시설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	
	안전관리(제7조)실시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별첨11>에 따른 학교시설 안전점검을 계획・실시하였는가?	✓			✓	
	CCTV 관리	CCTV 관리 업무 분장은 명확한가?	✓			✓	
5. 학교안전문화 확산		안전 사고 및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기록하고 자료를 기록해서 공유하며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			✓	
		각종 안전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류·공유·적용하고, 자주 사용하는 자료는 정기적으로 갱신, 정비하여 손쉽게 찾아 쓸 수 있게 준비하였는가?	✓			✓	
		학교 구성원의 안전 관련 행동, 실천, 태도 등에 대해 인정과 격려를 해 줄 수 있는 학교 풍토가 조성되어 있는가?	✓			✓	
		학교안전은 학교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로 확보될 수 있다는 가치관 확산을 위한 홍보・협업 등의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	
		안전관리활동에 따른 성과를 정기적으로 확인할 방안을 마련했는가?	✓			✓	
		학교구성원이 학교안전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도출했을 때 이를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는가?	✓			✓	
6. 기타사항		재난과 학교안전사고의 보고와 보상에 관한 절차와 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마련해 놓았는가?	✓			✓	

2) 3대 진단(위험성 진단, 학교안전풍토 진단, 교원안전역량 진단) 내용의 포함

○ 상기 학교 안전 자가 점검표로 대체

5. 안전사고 피해회복

가. 학교안전 관련 인적・물적 피해보상

공제사업	학교안전공제 (시도 학교안전공제회)	사각지대 공제사업 (학교안전공제중앙회)	교육 연구시설공제 (교육시설재난공제회)
공제료 납부	이00	·	이00
사고통지 담당	각 반 담임	·	이00
보상청구 담당	각 반 담임	·	이00

나. 학교안전사고 피해회복지원

○ 향후 학교안전사고 피해회복지원단과 분쟁조정지원단이 구성되고 활동 개시

Ⅲ 학교안전사고 피해 회복

1. 학교안전공제회 사고통지 및 공제급여 청구절차

	구 분	업 무 처 리
학 생	사고 발생	• 학교안전사고 –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피공제자(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사고 –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피공제자에게 발생하는 급식, 가스 등에 의한 중독, 일사병, 이물질 섭취·접촉에 의한 질병 등
학 교	사고 통지	• 공제급여관리시스템 접속() – www.schoolsafe.or.kr – 학교별 ID/비밀번호 입력 • 내부결재 후 통보버튼 눌러 공제회 전송
시·도 공제회	공제회접수	• 사고통지서 접수
학 생	치 료	• 병원치료
학 교 또는 학부모	공제급여 청 구	• 공제급여관리시스템 접속(PC 및 스마트폰) – www.schoolsafe.or.kr – (학 교)학교별 ID/비밀번호 입력 (학부모)휴대폰 인증 후 로그인 • 사고통지서 조회 후 청구서 입력 • 해당지역 공제회 및 시스템에 첨부서류 제출 ※ 첨부서류 : 청구서, 통장사본, 진료비계산서, 50만원 이상시 진단서·등본 추가
시·도 공제회	공제회접수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결정
	지급완료	• 공제급여 지급 및 결정내역 통보
학부모	심사청구	• 공제회의 지급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90일 이내 시·도 공제회의 보상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 보상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90일 이내 중앙회의 보상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

2. 학교안전공제중앙회 학교배상책임 공제급여 청구 절차

	구 분	업 무 처 리
피공제자 및 제3자	사고 발생	• 학교배상책임사고 – 교육활동 또는 학교시설물 관리업무로 인하여 제3자가 입은 인적·물적 피해 및 교직원·교육활동참여자의 차량파손 피해 – 어린이놀이시설 하자에 의한 인적·물적 피해 – 학교급식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식품위생법」 제101조에 따라 학교장에게 부과된 과태료 – 학교승강기사고에 의한 인적·물적 피해 – 학교 관리 하의 학생 휴대품 분실·파손 피해
학 교	사고 통지	• 중앙회 공제사업 업무처리시스템 접속 – http://ssifins.or.kr:8001/ – 학교별 ID/비밀번호 입력 • 사고등록 후 통보버튼 눌러 공제중앙회 전송
공제 중앙회	사고 접수	• 사고통지서 접수
피공제자 및 제3자	치료·수리	• 병원치료 및 파손물품 수리 진행
학 교 또는 피해자	공제급여 청 구	• 중앙회 공제사업 업무처리시스템 접속(PC만 가능) – http://ssifins.or.kr:8001/ – 학교별 ID/비밀번호 입력 • 사고통지서 조회 후 공제급여청구서 입력 • 중앙회 공제사업 업무처리시스템에 증빙서류 첨부 ※ 진단서, 영수증, 수리내역서, 수리완료사진, 통장사본 등
공제 중앙회	청구 접수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결정
	지급 완료	• 공제급여 지급 및 결정내역 공문 통보
피해자	심사청구	• 공제중앙회의 지급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90일 이내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보상재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

PC 및 스마트폰 청구 가능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공제급여 청구가 간소화됩니다!

공제급여 청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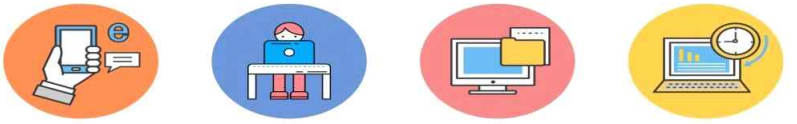

01 시스템 접속
PC 또는 스마트폰으로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 (https://schoolsafe.or.kr)에 접속

02 화면에서 청구서 작성
PC 또는 스마트폰 화면에서 청구서 바로 작성 (프린트 할 필요 없음)

03 구비서류 업로드
구비서류도 (우편발송 없이) 바로 PC나 모바일로 업로드

04 심사 및 지급
공제회에서 심사 후 공제급여 지급

PC 및 스마트폰으로 접속하여 간편하게 공제급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https://schoolsafe.or.kr/) 접속
- 공제급여 청구 시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우편발송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청구서 작성시 각종 구비서류(진료비계산서, 진단서 등)를 이미지파일로 첨부 가능합니다.
- 다양한 환경(IE, Chrome, Safari 등)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자 또는 카카오 알림을 이용해 공제급여 진행사항을 단계별로 알기 쉽게 안내해 드립니다.

학교 사용자 통계 기능도 강화됐어요!

문자 및 숫자로만 표현되던 통계를 이젠 **시각화된 그래프 형태**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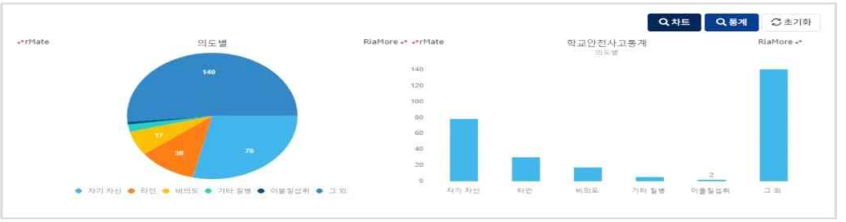

3. 상황별 응급처치 방법(1)

❑ 일반생활 응급처치

코의 상처 (코피, 비출혈)

둔탁한 물건 등에 의해 코에 충격을 받거나 고혈압, 고도의 변화 등에 의해서 발생된다.

처치

1) 머리를 약간 앞으로 숙여 혈액을 삼키거나 기도로 흡입되는 것을 방지한다.
2) 코뼈 바로 아래 부분을 5~10분간 눌러준다.
3) 콧등을 얼음주머니 등으로 대어주거나 코 아래 윗입술 바로 위를 압박한다.
4) 출혈이 멈추었더라도 바로 코를 풀지 않도록 한다.

코피 주의사항

피(비출혈)가 20분 이상 지속되거나, 코뼈가 부러진 것이 의심되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입의 상처

입의 상처는 피와 흔들리는 치아로 인해 기도를 방해할 수 있으므로 치료할 때는 환자가 호흡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응급처치

1) 머리, 목, 척추 부상이 없으면 머리를 전방으로 숙이고 앉아 있게 한다.
2) 머리, 목, 척추 부상이 있으면 회복자세를 취해준다.
3) 입술 관통상 일 경우, 입술과 잇몸 사이에 둥근 드레싱을 대어주며, 입술과 혀에 차가운 것을 대어준다.

치아 빠짐 (유실)

치아가 빠졌을 때, 신속한 지혈과 치아를 재이식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응급처치

1) 치아의 유실 시간을 파악한다.
2) 유실된 치아를 입안에 넣어 병원으로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나, 어린아이의 경우 삼킬 수 있으므로 자제한다.
3) 가장 좋은 방법은 유실된 치아를 우유에 넣어서 보존하는 방법이다. 만약 우유가 없다면 깨끗한 물에 넣어 보존한다.
   ✋ 유실된 치아를 우유에 보존하는 이유
   우유는 구하기 쉽고 멸균이 되어있고 세포가 죽지 않을 정도의 적당한 농도와 영양분을 가지고 있다.
4) 가능한 1시간 이내에 치과 병(의)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아야 한다.
5) 유실된 치아의 뿌리 부분은 절대로 만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 치아유실 후 빠른 병원 방문의 중요성

치아가 빠진 후 15분 내에 다시 심었을 때 부작용은 거의 없으며 빠진 치아가 공기 내에서 30분 이상 노출되면 치아를 재이식해도 대부분 뿌리가 흡수되는 부작용이 생긴다. 즉, 치아의 유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느냐에 따라 예후가 달라진다.

귓속의 이물

귓속에 파리 또는 벌레가 들어간 경우 불빛으로 유도해 밖으로 빼낸다. 이물을 바늘이나 철사 같은 것으로 빼낼 경우 귀 손상이 될 수 있으므로 자제한다.

[출처: 교육부,학교안전공제중앙회(2016),
한국안전교육 7대 표준안 교사용(고등학교)_7.응급처치, p.129~130]

❑ 드레싱

드레싱의 용도

감염방지, 출혈방지, 분비물 흡수

드레싱의 종류

1) **거즈** - 작은 상처에 사용되며 크기별로 나뉘어서 멸균 포장되어 있다. 일부 거즈는 특수 코팅이 되어 있어 상처에 달라붙지 않으므로 특히 화상부위나 분비물이 있는 상처에 유용하다.
2) **접착 드레싱** - 혈액이나 액체가 응고 되었을 때 주로 사용한다. 그리고 일회용 밴드처럼 생긴 것은 무균 드레싱과 붕대를 혼합한 형태로 작은 베인 상처나, 긁힌 상처에 유용하다.
3) **외상용 드레싱** - 크기가 크고 두껍고 흡수성이 있는 소재로 소독이 되어 있으며 주로 출혈이 심한 베인 상처나 벗겨진 상처에 유용하다.

드레싱 할 때 주의할 점

1) 솜뭉치나 뭉친 약솜을 드레싱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2) 출혈이 멈출 때까지 젖은 드레싱을 떼지 않는다. 피가 멈추지 않으면 새로운 드레싱을 덧댄다.
3) 상처에 달라붙은 드레싱을 억지로 떼어 내지 않는다. 만일 떼어 내야 한다면 따뜻한 물로 적신 후 조심스럽게 떼어 낸다.

❑ 붕대 용도

붕대의 용도

1) 드레싱이 상처에 붙어 있게 고정
2) 부목의 고정
3) 압박을 통한 지혈
4) 감염 등으로부터 보호
5) 부기(浮氣) 예방

붕대의 종류

1) 탄력 롤 붕대 : 염좌 등 압박 및 고정용으로 사용한다.
2) 사두붕대 : 양 끝을 잘라 귀가 네 개 있는 모양. 돌출된 부위에 유용하다.
3) 삼각건 : 반창고가 없어도 드레싱을 고정시킬 수 있으며,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

삼각건 매듭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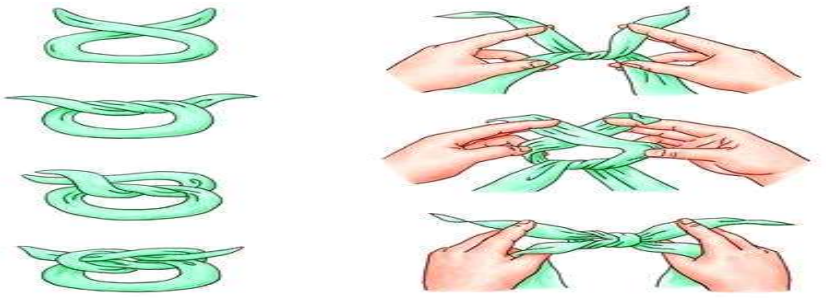

[출처: 교육부,학교안전공제중앙회(2016), , 한국안전교육 7대 표준안 교사용(고등학교)_7.응급처치, p.95~96]

삼각건을 사용하여 상처 응급처치하기

머리

머리에 댄 드레싱을 고정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특히 머리에 넓게 상처를 입었을 때 사용한다.

1) 삼각건의 밑변 부위를 폭이 약 5cm 정도 되도록 접는다.
2) 접은 부분의 중심이 이마 중앙의 눈썹 위에 오게 한다.
3) 삼각건의 양끝을 머리 뒤로 돌려 감고 교차하여 다시 앞으로 오게 하여 이마 중앙에서 묶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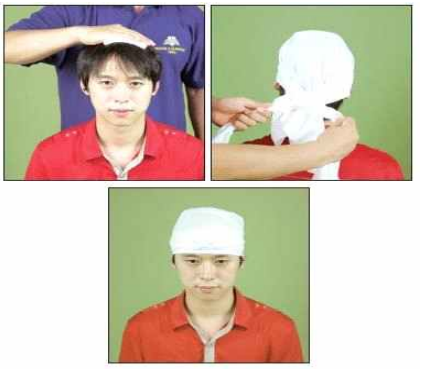

어깨

어깨나 상완(위팔)에 댄 넓은 드레싱을 고정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두 개의 삼각건을 사용할 경우에는 그 중의 한 개는 좁게 접는다.

1) 펴 놓은 삼각건 꼭짓점 부근에 세 번 접은 다른 삼각건을 놓고 밑변이 평행하도록 하여 2~3번 접는다.
2) 넓은 삼각건으로 상처를 덮고 접은 삼각건의 양 끝을 부상당하지 않은 쪽의 겨드랑이 바로 앞에서 묶는다.
3) 부상당한 어깨 쪽 삼간건의 양끝을 겨드랑이 밑으로 돌렸다가 다시 상완부에 돌려서 단단히 묶는다.

팔꿈치

팔꿈치의 상처에 댄 드레싱을 고정시키고 팔꿈치의 운동도 가능케 한다. 팔꿈치를 ㄱ자로 구부린 자세로 삼각건을 감는다.

1) 삼각건의 넓이를 7~10cm로 만든 후 드레싱 위를 중심으로 놓고 감기 시작한다.
2) 한번 돌려 감은 후, 한 쪽은 팔꿈치 위쪽으로 돌려 감아 주고 다른 한 쪽은 아래쪽으로 돌려 감아준다.
3) 삼각건의 양 쪽 끝이 팔꿈치 관절의 바깥쪽에서 (다른 사람이 볼 수 있게) 만나게 한 후 묶어준다.

[출처: 교육부,학교안전공제중앙회(2016),
한국안전교육 7대 표준안 교사용(고등학교)_7.응급처치, p.92]

❑ 탈구

정의

뼈가 정상위치를 이탈했거나 분리된 상태를 말한다.

증상

심한 통증을 유발하며, 관절의 모양이 변하고 붓는다.

응급처치

1) 비상시가 아니면 비의료인이 탈구를 바로 잡으려 하면 안 된다.
2) 부상부위를 편하게 하고, 냉찜질을 하여 통증과 부기(浮氣)를 가라앉힌다.
3) 쇼크에 대한 응급처치를 병행한다.

[출처: 교육부,학교안전공제중앙회(2016),
한국안전교육 7대 표준안 교사용(고등학교)_7.응급처치, p.100~102]

❑ 염좌

정의

인대 등 관절조직이 일부 또는 전체적으로 파열된 상태를 말한다.

원인

관절을 형성하는 뼈가 정상운동 범위를 심하게 벗어날 경우 주로 발생한다.

증상

1) 손상과 동시에 부어오르기 시작하며 통증을 유발한다. 부상부위를 움직일 경우 통증이 심해진다.
2) 부상부위의 피부색이 곧바로 변하지는 않지만, 변색될 경우 장기간 지속된다.

응급처치

1) 부상부위가 손목일 경우 팔걸이를 하여 고정시키고, 발목일 경우 환자를 눕히고 부목, 삼각건 등을 활용하여 고정시킨 후 부상부위를 높여준다.
2) 전문기관의 치료를 받기 전까지 상처 부위를 차갑게 해주는 것이 좋다.
3) 염좌가 심하다면 의료인이 도착할 때까지 가급적 움직이지 않는다.
4) 발목 염좌가 있는데 혼자 걸어야 한다면, 신발을 신은 채로 신바닥 굽 바로 앞에 접은 붕대의 중간 을 대고(신발은 벗은 상태라면 발등위에 접은 붕대의 중간을 대고 발바닥을 한 번 감은 뒤) 양끝을 발뒤꿈치 위(뒤)에서 교차시킨 후 다시 발목 앞으로 돌려 교차시켜 양끝을 발뒤꿈치의 양쪽을 지나간 붕대 밑으로 넣어 걸어서 다시 발등에서 묶는다.
5) 발목 염좌는 되도록 걷지 말고 신속하게 전문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출처: 교육부,학교안전공제중앙회(2016),
한국안전교육 7대 표준안 교사용(고등학교)_7.응급처치, p.100~102]

❑ 근육염좌

정의

근육이나 건 섬유가 비정상적으로 늘어나거나 찢어진 것

원인

근육을 심하게 사용하거나 갑작스런 움직임이 있을 때 발생

증상

관절사이의 통증, 부종, 기형이 발생한다.

응급처치

염좌의 처치내용과 같이 부상부위를 안정시키고, 냉찜질을 한다.

[출처: 교육부,학교안전공제중앙회(2016),
한국안전교육 7대 표준안 교사용(고등학교)_7.응급처치, p.100~102]

❑ 근골격의 손상 시 일반적인 응급처치

뼈의 골절이 의심되는 때의 응급처치

1) 골절이 의심되거나 골절된 환자는 가능한 한 움직이지 않아야 한다.
2) 환자를 함부로 옮기거나, 다친 곳을 건드려 부러진 뼈끝으로 골절을 악화시키게 해서는 안된다.
3) 굽은 곳을 바로 펴려고 하지 말고, 밖으로 돌출된 뼈를 안으로 밀어 넣어서는 안된다.
4) 골절이나 탈구 가능성이 있거나 의심이 되는 곳은 전부 부목을 댄 후 즉시 병원으로 후송한다.
5) 출혈이 심하면 지혈을 한 후 부목으로 고정하여 병원으로 후송한다.

탈구(관절이 빠졌을 때) 시 응급처치

베게나 쿠션을 사용 부상자를 가장 편한 자세로 유지해 주고 즉시 병원으로 후송한다.

염좌(근막 또는 인대 손상 등) 시 응급처치

1) 관절 주위의 인대나 조직의 손상으로 흔히 '삐었다' 고 하는 것이 이에 해당된다.
2) 부상자가 가장 편한 자세로 관절을 지탱해 주고 손상된 부분을 높게 해준다.
3) 찬 얼음으로 부은 것과 통증을 감소시켜 주면 효과적이다.
4) 골절과 같은 처치로 부목을 대준다.

부목사용의 목적

1) 부러진 뼈를 움직이지 않도록 하여 폐쇄골절이 개방골절로 되는 것을 예방한다.
2) 신경, 근육과 혈관 손상을 최소화한다. 즉, 부러진 뼈끝이 주위 조직을 건드려 출혈을 일으키는 것을 예방한다.
3) 동통을 경감한다.

발목 발등골절	염좌	하퇴골(정강이와종아리)골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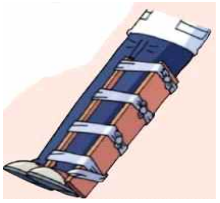

RICE(Rest-Icing-Compression-Elevation)

휴식(Rest)
1) 통증이 유발되는 움직임과 운동은 피하게 하고, 환자가 편안한 자세를 취할 수 있게 해준다.
2) 머리, 목 손상 의심 시 환자를 평평한 곳에 눕힌다.

얼음찜질(Icing)
1) 손상부위에 거즈나 의복을 대어 피부손상을 예방한 후 얼음 등을 이용해 차갑게 해준다. 얼음찜질은 부기(浮氣)와 통증, 불편함을 감소시킨다.
2) 얼음은 별도의 얼음주머니를 활용하거나 없을 경우 수건이나 옷에 싼 후 이용한다. 단,개방성 골절에는 얼음찜질을 하지 않는다.
3) 손상부위에 10분간 냉찜질을 한 후 손상부위를 확인했을 때 심하게 차갑다고 느낀다거나 빨갛게 된다면 냉찜질을 중단한다.

압박(고정)(Compression)
1) 근골격계 손상이 의심되면 얼음찜질을 하거나 높여 주기 전에 부목 등으로 손상부위를 고정한다.
2) 압박(고정)의 목적
   - 통증 감소
   - 주변의 연한 신체조직 손상방지
   - 심각한 출혈의 위험성 감소
   - 손상 부위의 혈액순환 개선
   - 폐쇄성 골절이 개방성 골절로 악화될 가능성 예방

올리기(손상 부위 높임)(Elevation)
1) 손상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하여 혈류량을 감소시켜 부기(浮氣)를 줄여준다.
2) 골절이 의심되는 부위는 부목을 대고 높여 준다.

[출처: 교육부,학교안전공제중앙회(2016),
한국안전교육 7대 표준안 교사용(고등학교)_7.응급처치, p.100~102]

손상부위에 부목을 사용 시 고려할 점

1) 가능한 주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손상부위를 지지하면서 부착한다.
2) 개방골절은 출혈, 감염방지를 위해 골절부위를 지지하고 붕대를 감아준다.
3) 단단한 부목사용 시 부드러운 천 등을 감싸주면 좋다.
4) 부목사용 시 부목과 신체 사이의 빈 공간에 고임(삼각건, 천 등을 활용)을 넣어 주는 것이 좋다.
5) 부목은 삼각건, 붕대, 옷 등을 이용해 잘 고정한다.
6) 손가락, 발가락 끝을 자주 확인하여 혈액순환이 잘 되는지 확인하며, 부목을 댄 아래쪽이 저린다거나, 손・발가락의 피부색이 변할 경우 부목을 잠시 풀어준다. (30분마다 한 번씩 혈액순환 확인)
7) 가능하면 부목을 댄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하고 충격처치를 병행한다.

❑ 화상

화상의 정의

과도한 열, 화학물질, 전기, 태양열, 방사능 등에 의해 피부조직에 손상이 유발되는 것→ 화상으로 피부가 벗겨지게 되면 감염이 유발될 수도 있고, 신체로부터 나오는 체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신체의 체온을 조절하는 기능이 손상될 수도 있다.

화상의 원인(연령별)

1) 3세 이하의 소아 - 가정에서 끓는 물
2) 3~14세 - 불장난 등으로 인한 화염 또는 그을림
3) 15세 이상 - 작업상의 사고

화상 응급처치

화상처치의 4가지 기본단계
1) 화상부위를 냉각시킨다.
2) 감염예방을 위해 화상부위에 드레싱을 해준다.
3) 쇼크 응급처치를 병행해 준다.
4) 의료적 도움의 필요 여부를 최대한 빨리 결정해야 한다.

학교에서의 화상 상황

1) 핫팩 : 저온 화상
2) 주전자(포트) : 컵이나 종이컵에 물을 붓다가 화상
3) 컵라면 : 컵라면에 물을 붓다가 화상을 입거나 컵라면 용기를 들고 이동 중 물을 쏟아 화상을 입음

화상의 종류와 증상

1도 화상 (표재성/홍반성 화상, Superficial Burns)	• 피부의 외피층만 손상된 것으로 대부분 일광에 의해 발생한다 • 증상 : 피부가 빨갛게 되고, 따끔거리는 통증이 있다 • 치료하면 대부분 특별한 흉터 없이 5~6일 안에 완치된다
2도 화상 (부분층/수포성 화상, Partial-Thickness Burns)	• 피부의 외피와 표피, 진피까지 손상된 화상이다 • 증상 : 물집, 심한 통증, 흉터나 피부변색(붉어짐), 탈모 등이 생긴다 • 치료해도 흉터가 생길 수 있으며, 보통 3~4주 안에 완치된다
3도 화상 (전층/괴사성 화상, Full-Thickness Burns)	• 피부의 전층, 피하지방, 근육, 뼈, 혈관, 신경 등 하층 구조까지 손상된 화상 • 증상 : 상처부위가 갈색 또는 거무스름하고, 아래에 있는 조직은 새하얗게 되고, 통증이 심하거나 신경의 끝부분이 파괴되어 통증이 없을 수 있다 • 치료해도 대부분 흉터가 남으며, 광범위한 3도 화상은 사망할 수도 있다

화상 발생 시 해서는 안 되는 행동

1) 된장, 간장, 기름, 약 등을 바르지 말 것(세균 감염 우려)
2) 물집을 터트리지 말 것(세균 감염 우려)
3) 눈 화상 경우 문지르지 말 것(각막 손상으로 실명 우려)
4) 떨어지지 않는 것을 억지로 떼어내지 말 것(피부손상, 세균 감염)
5) 피부가 부어오르기 전 시계, 반지 등 귀금속 제거할 것

출처: 응급처처법(대한적십자사), [출처: 교육부,학교안전공제중앙회(2016), 한국안전교육 7대 표준안 교사용(고등학교)_7.응급처치, p.111~112]

❑ 열성질환

	열경련	열탈진	열사병(일사병)
정의	• 고온에서 과도한 활동 후 체내 수분과 염분 소실로 일어나는 질환	• 땀을 과다하게 흘려 체내 수분이 떨어짐과 동시에 피부로 가는 혈관이 확장되면서 혈압이 떨어지는 질환	• 고온의 태양열 등에 의해 뇌의 체온중추기능이 마비되어 일어나는 질환
원인	• 고온의 환경에서 강도 높은 운동과 노동을 할 때	• 장시간 고온에 노출되는 경우	• 장시간 햇볕에 노출되는 경우
증상	• 근육 경련 (다리와 복부에 많음) • 따뜻하고 습한 피부 • 체온은 정상이거나 약간 높음 • 많은 양의 땀 분비	• 두통, 현기증, 메스꺼움 • 차갑고 축축하며 창백한 피부 • 체온은 정상 • 빠르고 약한 맥박 • 심한 발한	• 체온상승 • 건조하고 따뜻한 피부 • 의식을 점차 잃음 • 초기에는 강하고 빠른 맥박, 점차 느리고 약해짐 • 초기의 깊은 호흡에서 점차 얕은 호흡
응급처치	•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함 • 진하지 않은 소금물, 스포츠 음료를 줌 • 경련이 일어난 부위를 마사지 함	•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함 • 옷을 느슨히 함 • 젖은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 냄 • 의식이 있으면 시원한 물을 섭취 • 눕힌 상태에서 다리를 높여줌	•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함 • 옷을 느슨히 함 • 젖은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냄 • 가능한 빨리 의사의 치료를 받음 • 환자의 머리, 어깨를 약간 높임

열경련(Heat Cramps)

정의
고온상태에서 과도한 신체활동 후 체내 수분, 염분의 손실에 의해 근경련이 유발되는 상태
원인
심한 발한으로 인해 급격하게 신체 내 수분과 염분을 잃을 경우 발생된다.
증상
다리와 복부에 통증을 동반한 근수축, 체온은 정상, 축축한 피부
응급처치
시원한 장소에서 시원한 물 또는 스포츠 음료를 주면서 휴식을 취하게 하고, 수축된 근육을 마사지한다.

열탈진(Heat Exhaustion), 열성피로(Heat Fatigue)

정의
고온상태에서 체내 수분과 염분의 과도한 손실로 혈류량이 감소되고, 이로 인한 임상증상이 유발되는 것을 말한다.
원인 및 특징
극심한 고온에서 장시간 운동을 하거나 심한 노동으로 수분 손실이 진행되어 혈류량이 감소하지만 피부나 말초로 가는 혈류는 증가하며 생존에 필요한 장기로 가는 혈류는 감소한다.
증상
낮거나 정상적인 체온, 차고 축축하며 창백한 피부, 두통, 탈진, 메스꺼움, 현기증과 허약/무력감, 빠르고 약한 맥박 등
응급처치
1) 시원한 장소로 환자를 옮긴다
2) 옷을 느슨하게 해준다
3) 젖은 수건으로 열을 증발시킨다
4) 의식이 있으면 적은 양의 시원한 음료를 준다

열사병(Heat Stroke)

정의
고온에 의해 체온조절 중추의 기능이 마비되어 주요장기 손상이 유발되는 것을 말한다.
원인 및 특징
고온에 의한 체온조절 중추기능의 마비
증상
높은 체온, 붉고 건조한 피부, 의식 소실, 약하고 빠른 맥박, 얕고 빠른 호흡 등
응급처치
119에 도움을 요청하며, 그 외의 처치법은 열탈진의 처치와 동일하다.

❑ 동상 및 저체온증

동상의 정의

신체의 일부가 언 상태를 말한다.

동상의 원인

추위에 신체부위가 노출되었을 때 발생하며 기온, 노출시간, 바람 등이 주요 유발 요인이다.

동상의 종류

1) 표재성 동상 : 피부는 손상 되었으나 피부 아래 깊은 조직에는 영향이 없는 상태다.
1) 심부 동상 : 피부와 피부 아래 깊은 조직까지 침범한 동상이며 심하면 신체부위를 잃을 수 있다.

동상의 증상

동상 부위의 감각 소실, 끈적끈적하고 차가운 피부, 변색된 피부색

동상 응급처치법

1) 동상 부위를 따뜻하게 한다는 이유로 문지르지 않는다.
2) 동상 부위를 37~40도 정도의 물에 피부색이 정상이 될 때까지 담근다. 온도계가 없는 경우 손을 넣어 따뜻하다고 느낄 정도의 물이면 된다.
3) 동상 부위는 건조한 무균 붕대로 감고, 손・발가락 사이사이에는 멸균된 솜이나 거즈를 넣고 감는다.
4) 물집은 터뜨리지 않고, 신속하게 전문의의 치료를 받도록 한다.

❑ 벌에 쏘였을 때

정의

벌의 몸통 부분에 있는 침에 의해 사람의 신체에 손상을 입히는 것을 말하며 우리나라에 보고되는 중독 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원인

벌통을 건드린 경우, 요란한 색의 옷을 착용한 경우 등이 있다.

증상

보통은 쏘인 자리가 아프고 붓는 정도지만 벌독에 의한 알레르기가 있으면 피부 두드러기, 저혈압, 의식불명, 천식발작, 호흡곤란, 복통 등이 나타나며 심하면 생명을 잃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발견되는 벌독 알르레기를 유발하는 벌

꿀벌, 말벌, 땅벌 등

벌에 쏘인 경우 응급처치

핀셋을 사용하거나 신용카드 등으로 밀어서 제거하며, 벌침 제거 후 냉찜질을 한다.
(벌침을 제거할 때에는 독낭을 건드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벌독 알레르기 환자의 경우

호흡곤란과 의식장애 발생 시 누운 자세를 유지하면서 머리를 뒤로 젖혀 기도를 충분히 확보한 자세로 즉시 병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벌에 쏘이지 않으려면

1) 벌을 유인할 만한 향수, 화장품, 요란한 색의 옷을 피한다.
2) 벌이 가까이 접근하면 제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낮은 자세를 취한다.
3) 옥외에선 언제나 양말, 운동화를 착용하고, 몸에 맞는 옷을 입지만 원색의 옷은 피한다.

- 독충에 물렸을 때 가장 위험한 경우를 말하며 독충에 의한 사망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 전신적인 과민반응 - 두통, 어지럼증, 구토, 복통, 호흡곤란, 경련, 의식저하 등의 쇼크증상이 나타나면 매우 위험하다.
- 과민성 쇼크의 경우 - 급속히 진행되며 1~2시간 이내에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환자의 60~80%는 기도가 부어 질식하는 것으로 보고됨.
- 응급처치 - 쇼크 응급처치를 실시하되 최대한 빨리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 예방 - 평소에 알레르기나 특정물질에 과민반응이 있으면 주변에 알린다.

[출처: 교육부,학교안전공제중앙회(2016),,한국안전교육 7대 표준안 교사용(고등학교)_7.응급처치, p.127~128]

4. 상황별 응급처치 방법(2)

❑ 심폐소생술

1. 현장 안전과 반응 확인

환자에게 접근하기 전에 구조자는 현장 상황이 안전한지, 감염의 가능성은 없는지를 우선 확인한다.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환자에게 다가가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본다. 의식이 있다면 환자는 대답하거나 움직이거나 신음을 내는 것과 같은 반응을 나타낸다. 확인하는 동안에 쓰러져 있는 환자의 머리나 목의 외상이 의심되면 손상이 더 악화하지 않도록 불필요한 움직임을 최소화한다.

이때 환자의 반응이 없으면 119에 신고한다. 반응이 있고 진료가 필요한 상태이면 119에 연락을 한 다음 환자의 상태를 자주 확인하면서 구급상황(상담)요원의 지시를 따른다.

[출처: 질병관리청, 대한심폐소생협회(2020), 2020년 한국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요약본]

2. 응급의료체계 신고

반응이 없는 사람을 발견했다면, 쓰러진 사람이 심장정지 상태라고 판단하고 즉시 119에 신고(혹은 원내 심장정지 코드 방송)하고 자동제세동기를 요청한다. 심장정지 환자를 목격한 경우에는 주변에 큰 소리로 구조를 요청하고 다른 사람에게 119에 신고하도록 도움을 요청한다.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경우에는 직접 119에 신고한다.

3. 호흡 확인

호흡은 119 신고를 먼저 한 이후에 환자의 호흡을 확인해야 한다. 호흡 확인 과정은 매우 어려우며, 특히 심장정지 호흡이 있는 경우 심장정지 상황에 대한 인지가 늦어져 가슴압박의 시작이 지연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일반인은 반응을 확인한 후 반응이 없으면 119에 신고하고 자동제세동기를 요청한 후 구급상황(상담)요원의 안내에 따라 호흡의 여부 및 비정상 여부를 판별해야 하며 호흡이 없거나 비정상이라고 판단되면 즉시 가슴압박을 시작한다.

[출처: 질병관리청, 대한심폐소생협회(2020), 2020년 한국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요약본]

4. 가슴압박

가슴압박은 심장정지 환자의 가슴 정중앙(복장뼈의 아래쪽 1/2)에 한 손의 손바닥 뒤꿈치를 올려놓고 그 위에 다른 손을 올려서 겹친 뒤 깍지를 낀 자세로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 성인 심장정지의 경우 압박 깊이는 약 5cm, 가슴압박의 속도는 분당 100회～120회를 유지한다.

또한, 가슴압박 이후 다음 가슴압박을 위한 혈류가 심장으로 충분히 채워지도록 각각의 가슴압박 이후 가슴의 이완을 최대로 할 것을 제안한다. 가슴압박이 최대한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가슴압박이 중단되는 기간과 빈도를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 성인 심장정지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할 때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의 비율은 30:2로 시행하는 것을 제안한다. 심폐소생술 시작 1.5～3분 사이부터 가슴압박의 깊이가 얕아지므로 2분마다 가슴압박을 교대해 주는 것이 구조자의 피로도를 줄이고 고품질의 심폐소생술을 제공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성인 가슴 압박법]

[소아 가슴 압박법]

[출처: 질병관리청, 대한심폐소생협회(2020), 2020년 한국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요약본]

5. 기도유지 및 인공호흡

1) 기도유지 방법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자신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훈련된 구조자는 머리기울임-턱들어올리기(head tilt-chin lift) 방법을 사용하여 기도를 개방한다. 이 방법은 한 손을 심장정지 환자의 이마에 대고 손바닥으로 압력을 가하여 환자의 머리가 뒤로 기울어지게 하면서, 다른 손의 손가락으로 아래턱의 뼈 부분을 머리 쪽으로 당겨 턱을 받쳐주어 머리를 뒤로 기울이는 것이다. 이때 턱 아래 부위의 연부조직을 깊게 누르면 오히려 기도를 막을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기도가 열리면 환자의 입을 열어 입-입 호흡을 준비한다.

2) 인공호흡 방법

인공호흡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1초에 걸쳐 인공호흡을 한다.

② 가슴 상승이 눈으로 확인될 정도의 일회 호흡량으로 호흡한다.

③ 가슴압박 동안에 인공호흡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④ 인공호흡을 과도하게 하여 과환기를 유발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출처: 질병관리청, 대한심폐소생협회(2020), 2020년 한국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요약본]

❑ 자동제세동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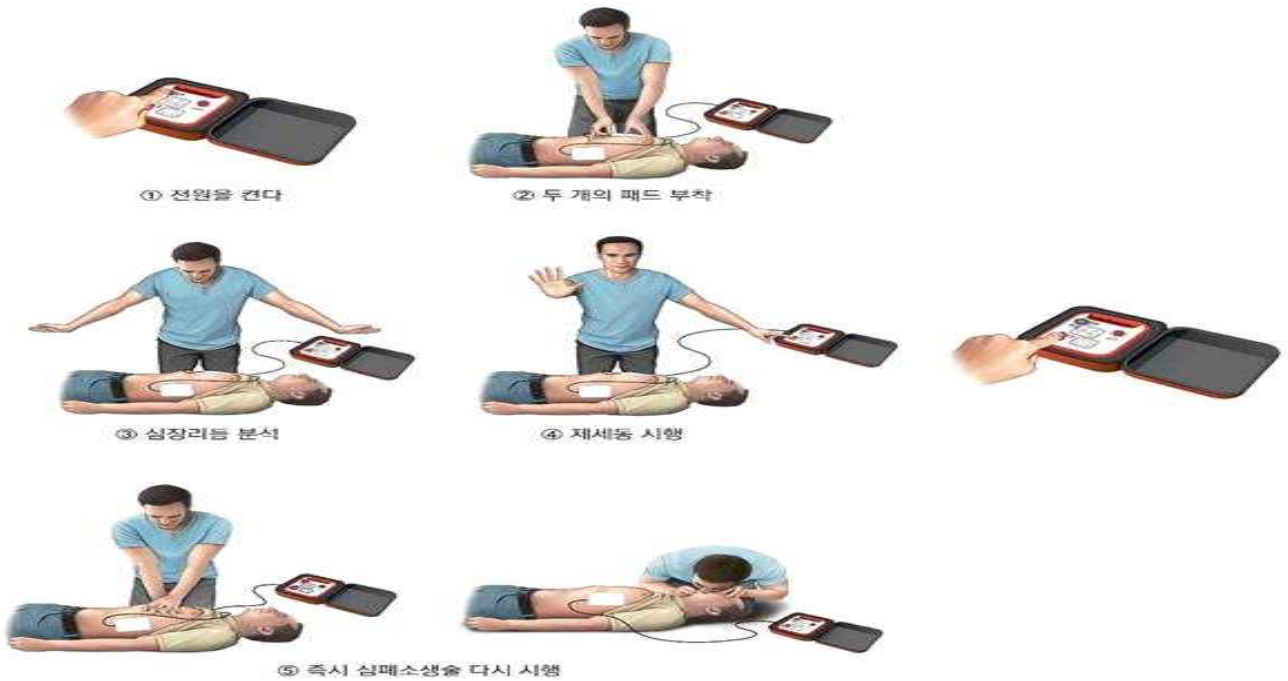

[출처: 질병관리청, 대한심폐소생협회(2020), 2020년 한국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요약본]

❑ 기도폐쇄(하임리히법)

순서	처치 방법
1	환자에게 “목에 뭐가 걸렸나요?” 라고 묻고, 말을 하지 못한다면 기도 폐쇄이므로 즉각 처치 시행
2	환자가 기침을 크게 한다면 방해하지 않도록 한다. 하지만, <u>스스로 기침을 못하는 성인이나 1세 이상의 소아 환자</u>라면 <u>즉시 등 두드리기 시행</u>
3	등 두드리기 5회 연속 시행 후 효과가 없다면 5회의 복부 밀어내기(하임리히 법) 시행
4	기도폐쇄 징후가 해소되거나 환자가 의식을 잃기 전까지 계속 등 두드리기와 복부 밀어내기 5회씩 반복

[출처: 질병관리청, 대한심폐소생협회(2020), 2020년 한국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요약본]

❑ 골절

골절의 형태별 분류

1) 분쇄골절 - 골격이 손상되어 두 개 이상의 골절 파편으로 나누어진 경우
(자동차 사고 등에 많음)
2) 나선골절 - 골절이 뼈 둘레를 돌면서 골절된 형태(스키사고 등에 많음)
3) 사선골절 - 뼈의 축에서 사선으로 골절된 형태
(뼈에 약간 또는 중간 정도의 압력이 가해진 경우)

골절의 원인별 분류

1) 외상성 골절 - 일반적인 골절, 정상적인 뼈가 외력으로 인해 발생
2) 특발성 골절 - 질병으로 인해 변화된 특정부위의 뼈가 약해져 외력 없이도
근수축에 의해 이상골절이 발생된 상태. 병적 골절이라고도 함
3) 피로성 골절 - 일정 외력이 장기간 반복되어 뼈에 누적되면 피로현상으로
변질되는 현상

신체 부위별 골절처치

1) 빗장뼈(쇄골) 골절

증상

- 일반적인 골절 증상이 나타난다.
- 대부분 부러진 부분이 만져진다.
- 팔을 어깨위로 들지 못한다.
- 부상당한 어깨가 반대편보다 처진다.

응급처치

- 부상당한 쪽의 손을 팔꿈치 보다 높게 하여 반대쪽 어깨에 되고 삼각건을 댄다.

2) 위팔뼈(상완골) 골절

증상

- 골절의 일반적인 증상이 나타난다.
- 어깨관절의 운동을 할 수 없다.

응급처치

- 팔꿈치를 ‘ㄴ자’로 구부린 후 어깨부터 팔꿈치 길이의 부목을 댄다.
- 삼각건을 부러진 뼈 위쪽과 아래쪽에 하나씩 묶는다.
- 삼각건으로 팔걸이를 만든다.
- 삼각건으로 팔 전체를 고정한다.
- 부목이 없을 시 붕대로 팔 전체를 가슴에 대고 감는다.

3) 팔꿈치뼈(주관절) 골절

증상

- 관절부위가 붓고 팔을 구부릴 수 없다.

응급처치

- 겨드랑이부터 손가락까지 부목을 댄다.
- 팔꿈치가 구부러져 있으면 팔을 무리하지 않게 끌어올리고 팔을 몸체에 대고 삼각건을 고정시킨다. 팔과 몸을 고정할 때는 골절부위를 건드리거나 힘이 가해 지지 않도록 조심한다.
- 구부러진 팔을 무리하게 펴지 않는다.
- 이송 시 삼각건으로 허리를 묶어 고정한다.

4) 아래팔뼈(전완골) 골절

증상

- 아래팔 뼈 두 개가 모두 부러질 경우 골절의 일반적 증상이 나타난다.
  (아래팔 뼈 전완의 뼈 한 개 또는 두 개가 부러질 수 있다)
- 한 개만 부러졌거나 손목 뼈마디가 부러졌을 때는 부상 부위를 움직이기 어렵다.

응급처치

- 편안한 자세로 안정을 취하게 한다.
- 팔꿈치부터 손가락까지 길이의 부목을 손바닥 쪽에 댄다.
- 두 개의 삼각건을 골절부위 위쪽부터 맨다.
- 손바닥이 가슴 쪽을 향하도록 하고, 팔꿈치 보다 약 10cm정도 높게 한 후 삼각건으로 고정시킨다.

쇄골(빗장뼈) 골절	주관절(팔꿈치골절)	전박골(아래팔뼈골절)

출처: 응급처치법(대한적십자사)
[출처: 교육부,학교안전공제중앙회(2016),
한국안전교육 7대 표준안 교사용(고등학교)_7.응급처치, p.106~108]

❑ 전기화상

특징

1) 화상의 크기가 작아도 신체 내부의 심한 손상이 동반되며, 특히 심장은 전기에너지에 의해 심정지가 발생할 수 있다.
2) 전기가 신체에 접촉하면 전기가 신체내부로 유입되고 다른 부위로 나오게 되는데 전기가 들어가고 나온 곳에 화상을 입고 전기가 나오는 곳의 상처가 깊고 크다.

전기에 의한 화상 응급처치 방법

1) 구조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현장의 모든 전원을 차단 후, 접근해야 한다.
2) 필요시 심폐소생술, 제세동기 사용, 쇼크, 화상, 골절 처치 등을 실시한다.
3) 처치 - 119를 통해 화상전문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 전문치료를 받도록 한다.

❑ 저체온증

저체온증의 정의

내・외부의 다양한 원인에 의해 체온이 35도 이하로 떨어진 상태를 말한다.

저체온증의 원인

찬물 속에 오래 있거나 젖은 의복을 장시간 입고 있을 때, 난방시설이 없는 곳에 장시간 체류 등 장시간 낮은 온도에 노출되는 경우에 주로 발생한다.

저체온증의 증상

1) 체온이 35도 이하로 떨어진다.
2) 체온이 떨어지면서 심장이 비정상적으로 박동하며 심하면 심장마비로 사망한다.
3) 온몸을 떤다.(증상이 진행됨에 따라 떨림은 없어진다.)
4) 몸이 저리다.
5) 멍한 눈으로 허공을 응시한다.
6) 무감각해지고 의식상태가 희미해진다.

저체온증의 응급처치법

1) 신속히 환자상태를 파악하여 치명적인 상태(호흡정지, 심장마비) 유무를 확인한다.
2) 필요 시 119에 도움을 요청한다.
3) 젖은 의복은 벗기고 환자의 몸을 건조하게 유지한다.
4) 따뜻한 장소로 옮겨 몸을 따뜻하게 한다. 단, 갑자기 체온을 높이지 않는다.
5) 저체온증 환자가 의식이 잃을 경우 필요 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며 구조대원을 기다린다.

저체온증의 단계

저체온증의 온도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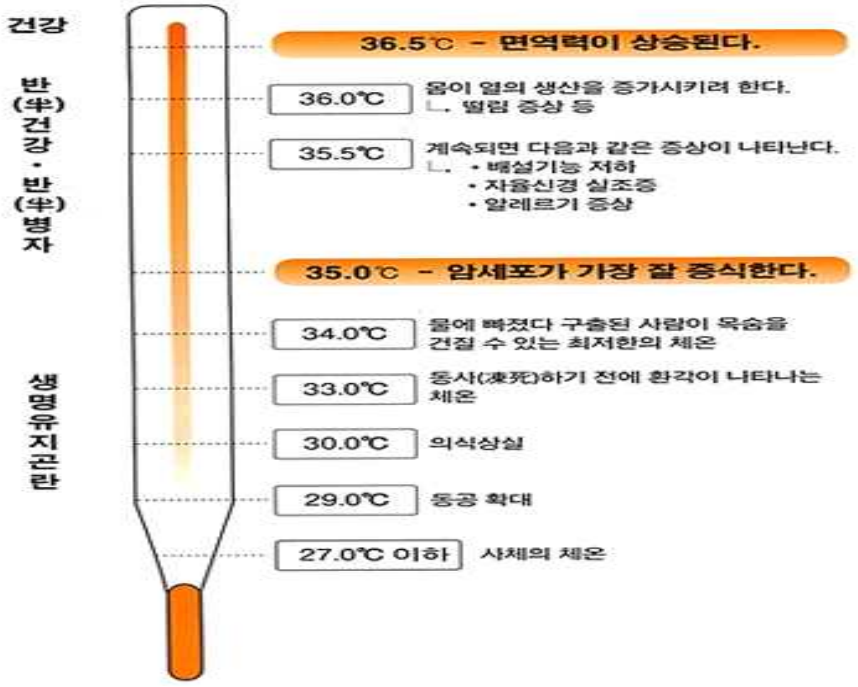

저체온증 환자에게 하지 말아야 할 행동

- 갑작스럽게 체온을 변화시켜 환자의 떨림 증상을 억지로 중지시키려 하지 않는다
- 32℃ 이하의 저체온 환자에게 뜨거운 물병이나 핫팩 등으로 급속 가온치료를 하지 않는다. 급속가온은 말초의 차가운 혈액을 순환시켜 심정지를 일으킬 수 있다.

[출처: 교육부,학교안전공제중앙회(2016),
한국안전교육 7대 표준안 교사용(고등학교)_7.응급처치, p.120~122]